

第289回國會
(臨時會)

知識經濟委員會會議錄
(法案審查小委員會)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4月22日(木)

場 所 知識經濟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25.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계속)
2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29. 중소기업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계속)
30. 遞信窓口業務의委託에 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31.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2. 大韓石炭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
43.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 의원 대표발의)	4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	6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6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9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9
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15
30. 遞信窓口業務の委託에 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31.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3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1
3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3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3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6
3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26
3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8
4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32
4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2

42. 大韓石炭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43.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득 의원 대표발의)	37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	37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21)(계속)	37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2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8
24.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25.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2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27.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28.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조승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38
29. 중소기업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이시중 의원 등 61인 발의)(계속)	38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	46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46
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46
5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46
4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48
4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8
4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룡 의원 대표발의)	48
4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48
4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50
4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0
5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52
5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52
5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55
3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6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노영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기관별로 나누어
심사하되 먼저 지식경제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제1차관이 출석해야 합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2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근혜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인수 합병 등 간접적 해외이전 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대상기관이 매각·이전 등의 방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지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 합병, 외국과의 합작투자를 실시하여 국가핵심기술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실제 운영상 법 11조에 포함되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경우를 모두 규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합병투자까지도 규제를 한다면 내국 투자가 위축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종혁 위원님께서 취지를 강조하시고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적극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표현 자체가 현행 규정으로도 이 내용을 포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규정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내용을 보다 답을 수 있는 워딩을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똑바로 해요. 하겠다?

○**김재균 위원** OK한다 그 말이지.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은 이의가 없다는 얘깁니까, 뭘니까?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향후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규정으로도 제안하신 입법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조문상 해석이 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니까 현행법 조문을 가지고도 지금 이 개정법률안에서 담은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문 내용이 모호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현행 조문을 좀 더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워딩을, 좀 더 클리어하게 답을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을 추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정부 측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玲愛 委員** 먼저 이 위원님한테……

저도 워딩에 관해서…… 이게 계약 자체를 인가받자는 애긴지 그게 좀 불분명해서……

○**이종혁 위원** 아니, 그 점은 아니고요.

왜 그러나 하면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라는 목적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목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수 합병이라든지 또 외국인투자 계약이라든지 합작투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인수 합병, 합작투자에 대한 계약이 성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그와 같은 실제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국익에 저해되는,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李玲愛 委員** 그런데 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종혁 위원** 어느 것일까요?

○**李玲愛 委員** 말하자면 기술을 이전하면 그 이전하는 계약 자체를 인가받으면 되는데 인수 합병의 경우는 기술이전이라는 행위가 없거든요, 회사를 그냥, 주인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종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李玲愛 委員** 그러니까 인수, 합작계약 자체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거기서 인가를 받아야……

○**이종혁 위원** 아니, 그것을 막을 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예를 들자면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요. 뭐냐 하면 인수 합병 이후에 우리의 국가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그러니까……

○**李玲愛 委員** 그러니까 유출의 법률적인 행위가 없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어차피 기술은 회사가 가진 건데, 회사의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 워딩을 조금……

○**이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워딩 전에 우리가 이 개념을 저는 분명히, 우리가 뭘 막자라고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저께 제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여기에 관련된 개정안 검토보고를 받았어요.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전문가 의견을 두 분이 보내 주셨습니다. 한 분은 한국법제연구원의 현대호 박사고 한 분은 단국대학교의 손승우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현대호 박사의 얘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현 조항으로도 이전에 관한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손승우 교수의 답변은 뭐냐 하면 ‘국가기술을 해외 이전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인수 합병에 의해서 획득한 이후에도 기술이전이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다른 다양한 방법에 의해 용이하게 기술을 유출할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에 제가 이번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던 쌍용자동차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다반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요, 합작에 관한 투자 상담을 하면서도 정보를 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미 작년 국정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인수 합병 또 합작투자라고 하는 외양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핵심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핵심기술을 빼내가기 위해서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런 얘가지요. 그러니 이런 경우를 어떻게 막겠느냐……

○**李玲愛 委員** 제가 그것은 알겠고,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겠는데 그런데 합작계약을 하면 그 자본이 이 회사의 주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따로 이전이라는 행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작계약 단계에서 핵심기술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인가받아야 되지 않느냐……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안하신 처음의 입법 취지는 지금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작계약, 국가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인수 합병 자체를 아예, 단계에서 못 하도록……

○**李玲愛 委員** 못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라……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기술과 관련해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쌍용자동차를 인수……

○**이종혁 위원** 아니, 지금 현 개정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아니요, 취지는 그랬는데 입법 취지가 그게 아니다라는 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은 쌍용자동차가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데 상해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당시에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합병을 승인해 주십시오’, 그 기술과 관련되는, 그 단계에서 지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부과해야 된다는 취지로 당초에 해석이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례가 없는, 다른 나라의 선례가 없고 어떤 나라에도…… 외국기업의 인수 합병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그런 외국인 투자……

○**李玲愛 委員** 막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기 때문에 인수 합병이 된 이후에도 그 기술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이 법안의 제안 취지입니다.

○**배은희 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어떻게 막느냐는 거지요.

○**李玲愛 委員** 그렇지, 왜냐하면 그 회사의 주인이 돼 버렸는데.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도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인수 합병됐을 때 기술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시고 또 다른 전문가 의견은 배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을 가지고 갈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것을……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범조문으로 바뀌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안을 주시라는 거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게 그런 조문을 여기 답을 수 있는……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안이 지금 없으세요?

○李玲愛 委員 그것을 생각하셔서 하시라고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 안이.

○이종혁 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개정안의 취지는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의 인수 합병, 합작투자 이런 것들을 봉쇄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도구로 해서 우리 핵심기술을 유출시키고자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된다는 그런 애깁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주무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해야 된다 이게 바로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당장 결론을 못 낸다 하더라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현대호 박사하고 손승우 교수.

○이종혁 위원 손승우 교수, 이 분 얘기의 후단부 얘기가 이 개정안 취지의 아주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 관련되어져 있는 해외의 입법사례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시고 해서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와 같은 소위 제도적 장치를 지금은 가져야 된

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워딩을 차관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조 의원 대표발의)

(10시17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조영택 의원과 김성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영택 의원안에서는 지방대학 졸업자의 우선고용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재 지방대학의 우수졸업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제 전체위원회에서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저희들 의견은, 개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학력제한 철폐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정책 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시대적 흐름 등에 배치되며 역차별하는 문제 또 지역 간 취업 불평등 우려 등을 감안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김성조 의원안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지방 복귀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 돌아오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적·행정적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또 정확하게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지난 1월 달에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조세 감면을 해주자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이런 조세감면 이외에 다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해서는 외국 기업과의 관계에 따라서 내국민 대우 위배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하는 우려를 표명을 하고 세제 지원을 우선 시행한 후에 추후에 검토하자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조 의원의 조세제한특례법이 지금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U턴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위원회에서도 이번 회기 중에는 이것이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성조 의원안에서는 ‘수도권’ 개념 정의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으로 정의해서 그 개념을 명확화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들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첫 번째, 조영택 의원님이 제출하신 지방대생 우선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한 세 가지 정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력 차별해서 대졸자에 대해서만 우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학력과 관계없이 해당 지역 출신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지역제한제도는 이미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해당 지자체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체계상으로도 균특법은 일반적인, 총괄적인 균형이고 특별

채용을 위해서는 각 해당 법에서 개정해야 될 문제라는 검토의견에 정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김성조 의원님이 제출하신 U턴 기업의 지방이전 시에 재정적인 또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재 아시다시피 U턴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는 세제상의 제도적인 지원을 해 주는 안이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되어 가는 추세나 이런 것을 봐서 추후 필요하다면 예산적인 지원이 수반되는 이 문제는 그 결과를 봐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김성조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기획재정부의 여러 가지 세제안 같은 것들을 보고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런데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의 얘기지요. ‘국내 자본이 투자된 기존의 해외생산 기반이 실제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중소 제조업체일 경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잣대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나중에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 후에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아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나는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학재 위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방대학 졸업자의 우선 고용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반대한다는 말씀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지금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써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도입이라고 해

서 학력과 관계없이 그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은 공기업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기업에서 많은 지방 인재를 채용하기 때문에 유리할 거고 또 상대적으로 공기업이 많이 없는 그런 지자체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지자체 공통적으로도 동의하지 않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의견이 온 게.

○**이학재 위원** 그러면 해당 지자체라고 하는 것이 공기업이 없는 그런 지자체를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해당 지자체라는 표현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14개 시도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배은희 위원** 바로 인접한 데는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지요. 같이 지방이면서 바로 인접한 데, 공기업이 있는 데 인접한 지역은……

○**소위원장 노영민** 공기업이라는 게 본사가 대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으니 지방에서는……

○**이학재 위원**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졸업자들이 우선 채용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인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래서 시도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지방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고용을 촉진하게 된다 이 말씀인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것까지 이 사람들……

○**이학재 위원** 지자체가 반대를 한다고 하니 제가 이해가, 지자체를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지자체가 반대를 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어서……

○**이종혁 위원** 그리고 공기업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하잖아?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담당 국장이 조금……

○**지식경제부지역경제정책관 김경수** 지역경제정책관 김경수입니다.

지자체가 지자체의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이미 부산 강원 대전 이런 데는 해당 지자체 출신이 70~80% 있어 가지고 이 이상 더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피해가 크다는 그런 판단도 있고, 공무원을 해당

지역 출신자로 뽑는 것에 관해서.

두 번째는 공공기관 문제는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지만 사실은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건데 해당 지역에서 많은 인재를 채용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자체가 전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해당 지역에서 뽑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뒀습니다. 다만 그것을 의무화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결국 서로 제로섬 게임인 거지요. 제로섬 게임이 되어 가지고 별로 실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위원장 노영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어떤 겁니까?

○**지식경제부지역경제정책관 김경수** 이미 균특법에서 수도권이라고 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더 연계시키는 겁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글썄, 수도권의 개념을 명확화한다는 건데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으로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2조제1호가 뭐냐고.

○**지식경제부지역경제정책관 김경수** 2조1호의 수도권이란 지금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균특법에서 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학재 위원** 또 하나만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이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국내 자본이 투자된 기존의 해외생산기반이 실제 국내로 이전하는 중소제조업체로 한정한다’ 이런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랬을 때 경쟁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부실하다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 여기서 U턴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그런 것은 어떻게 걸러 내나요?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목적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조세감면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한번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

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정말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런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검토보고의 취지입니다.

○**이학재 위원** 기업의 내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그것도 나중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검토를 하겠습니까.

○**이종혁 위원** 시혜와 혜택을 주는 거니까 요건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소위원장 노영민** 논의 좀 해 보고 하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10시29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이종혁 의원과 백원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이 조금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이종혁 의원안에서는 기준공장면적을 및 기준건축면적을 적용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공장면적을 준수제도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을 하고 있고 또한 비제조업종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도인 기준건축면적을 제도를 도입하되 그 면적률은, 이것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업종 간의 형평성 제고와 투기 목적의 수요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체계상 자구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부칙의 적용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한 부칙에 타법 개정

을 통해서 기준공장면적을 제도의 적용 의무화에 따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대기간 만료 전 양도된 공장 중 일정 요건 시설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현행법은 투기 방지 등을 위해서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대사업자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리기관은 해당 양수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해당 양수인이 산업단지에 적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취지는 실수요자의 이용촉진 및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을 감안할 때 산업용지는 제외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 공장입니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되 친인척 및 채권·채무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오른쪽에 수정의견에 담아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입주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산업용지 등의 양도명령제도 도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영업 또는 장기간 보유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공단의 보육시설사업 운영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산집법 시행령에서 산업단지공단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육사업을 법률로 올려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역설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기혼 근로자의 근로안정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국세청에 휴·폐업 업체 현황자료 제출 협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휴·폐업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고 해당 자료의 유용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인용한 조문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인데요, 이 조항은 국세 정보의 비밀 유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6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세무공무원이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인데요. 개정안의 취지는 휴·폐업 정보에 관해서 공유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휴·폐업 정보는 부가세법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용 법조문을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휴·폐업 정보’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입주계약 해지자 중 산업용지 양도 의무 위반자 처벌 강화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가 산업용지 등의 양도규정 위반 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위반행위, 즉 입주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공장 설립을 하지 않아서 양도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과 동일한 제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고 저렴하게 공급된 산업용지를 불법 양도 시에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동 법률에 관련해서는 대체토론 시에 6개 조문에 대해서 대부분이 찬성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의견을 주셨고 정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을 하도록 하고 다만 자구수정과 관련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전부 법체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용해서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저는 이의 없습니다.

○이학재 위원 이것 하나만 좀 여쭙 볼게요, 법 만드셨으니까.

기준공장면적을 적용 의무화, 잘 몰라서 우문일 수도 있는데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기준건축면적 적용률에 부족한 곳을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3년 후에는 공장이 커질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축을 하고, 또 한 10년 후에는 더 증축을 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장용지를 이렇게 건축면적을 적용을 의무화해 갖고 하다 보면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종혁 위원 현실적으로 이학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면 내용들은 아주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봅니다.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보는데, 이번의 이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산업집적활성화법에는 ‘기준건축면적률’이라고 하는 이 개념, 용어 자체가 없고 현재는 ‘기준공장면적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아주 합리적인 지적인데 이 개정의 취지는 그런 내용하고는 다른……

○이학재 위원 그런가요?

○이종혁 위원 뭐냐면 제조업종이 아닌 비제조업종의 경우에 ‘기준건축면적률’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원래의 법에 있었던 산업용지 부분에 적용되던 기준공장면적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새로 신설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법 11조에 보면 이런 것을 할 때는 ‘이에 적합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 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꾼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학재 위원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임의규정으로 그냥 놔두겠다는 말씀인가요?

○이종혁 위원 아니, 그것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거지.

○이학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제조업 같은 경우에 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강행규정으로 하면, 부동산 투자를 막자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업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미리 공장용지를 크게 갖는다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해서 규제를 하다가 보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

려가 생겨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식경제부지역경제정책관 김경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공장면적률이라는 것은 그렇게 과도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최소 규모로 정해져 있다는 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증설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공장다운 것을 유지하려면 최소 이 정도는 공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증설을 2차, 3차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학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

○**지식경제부지역경제정책관 김경수** 그렇습니다. 비제조업인 경우에도 하여튼 가능한 한 탄력성 있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다만 비제조업은 여태까지 기준면적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도입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찬성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은희 위원** 제가 하나 의견이 있는데요. 38조의2제4항 단서 신설에 관련해서 사실은 임대기간 만료 전이나 입주기간 만료 전에 양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양도나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게 39조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양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양도를 할 수가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양도한 경우에 지금 면죄부를 주자는 거거든요.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게 목적이려면 오히려 수정의견에 있는 이런 단서조항은 안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만 구제하는 거다 해서 이것을 허용하면 법을 위반해서 양도한 사람에 대한 벌칙조항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따로 보고를 받았는데 현황 파악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양도를 했을 때 얼마만한 금전적 이익을 보고 있는지 이런 현황 파악을 해서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항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혁 위원** 그 점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의 개정 취지가 뭐냐면 지금 현행법에 있어 가지고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대사업자가 소위 말해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은희 위원** 아니지요. 그렇지 않고 39조에 따라서 그것을 적법하게 하면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39조를 안 지키고 했을 경우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구제해 주자는 거거든요.

○**이종혁 위원** 아니, 이 개정 취지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자는 거거든요.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양도를 적법하게 할 수가 있어요. 39조에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공단에다가 다시 되돌린다는지……

○**이학재 위원** 관리기관을 통해서.

○**배은희 위원** 예, 관리기관을 통해서 다 양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를 지금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39조 그 항이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학재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거기에플러스해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선의의 피해자인 양수인이 어떤 경우인가요?

○**지식경제부지역경제정책관 김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에서는 불법적인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처벌당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수를 실령 계약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서 양수 의미가 없게 하는 그런, 불법적인 경우에는 양도·양수 양쪽 다 불이익을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양도 쪽의 벌칙은 그냥 살아있다손 치더라도 양수 쪽은 보호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실체는 법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지금 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39조 사항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지식경제부지역경제정책관 김경수** 39조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건데 대체토론대로 수정안이 나간다 하더라도 벌칙은 여전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

○**이종혁 위원** 그런데 배 위원님 말씀은 39조에서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취지거든요. 나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설명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배은희 위원이 지적하신 39조와 관계해서 지경부에서 답변 한번 해 보라고요.

○**지식경제부지역경제정책관 김경수** 하여튼 양도인이 38조 적용을 받느냐, 39조 적용을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양도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양쪽에 다 벌칙조항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양수인의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지만 입주를 못하게 되니까 사실상 양수가 지금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못하는 그것을 보호하자는 거거든요.

○**지식경제부지역경제정책관 김경수** 그것을 보호하자는 건데 다만 그것도 지금 여기에 수정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자’라는 것을 규명하는 문제가 테크니컬한……

○**배은희 위원**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실수요자면 해 줘야지요.

○**이종혁 위원** 배 위원님, 내가 말씀 좀 드릴게요.

뭐냐면 우선 이건 양도인의 벌칙조항이나 양도인에 금지되어져 있는 현행의 규정 정신은 그냥 그대로 살리고 다만 양수인이 선의의 취득자일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해당 산업 단지에 적합한 그런 사업을 하는—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예외적으로 좀 보호를 해 주자 그런 취지거든요.

아니,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내가 수용하겠다는 이유는 그런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를 하되 그러나 그것을 일정 부분의, 예를 들자면 채권·채무 관계에 있거나 친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에서 도대체 그거 할 수 없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행위들이 제재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선의의 범위로 넣어 가지고 양수를 인정해 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소위 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건 맞는 취지다, 그래서 제가 그건 받아들이겠다,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원래 이 개정안 취지를 이렇게 보면 저는 이번에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도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개정안을 내 가지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합리적인 기준을…… 39조는 이것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저는 본 거거든요.

○**李玲愛 委員** 38조, 39조는 규제대상이 다르네

요.

○**이종혁 위원** 예, 대상이 다른 걸로 저는 봤거든요.

○**이학재 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지금 선의의 취득자, 선의의 피해자, 이 부분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가 있나요, 양수인이?

○**지식경제부지역경제정책관 김경수** 그렇죠.

○**이학재 위원** 이게 왜냐하면 양도 자체가 불법인데……

○**지식경제부지역경제정책관 김경수** 그러니까 양수인이라는 것은 양도인으로부터 계약을 하면 당연히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선의로 생각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거죠. 그런데 불법적인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만 입주 자체가, 입주계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선의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게 지금 현재 입법취지가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만……

○**이학재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양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자기가 잘못 알고 양도인한테 속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양수인을 보호할 수가 있나요?

○**이종혁 위원** 그건 보호할 수 있지. 그것은 다른 입법취지에도……

예를 들자면 민법이라든지 우리 6대 주요 법률 내에서도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규정들은 어느 군데에 있어요. 그런데 이건 법에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그런 정신이고, 그래서 여기에도 이 취지가 바로 뭐냐면 양도인은 불법적 행위에 관련돼 가지고 제재조항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선의의 피해자, 그런 경우에는 민법상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불법행위에 관련되어져 있는 물권취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규정들이 다 있거든요. 여기도 바로 뭐냐면 그런 유의 얘기입니다.

○**이학재 위원**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관리기관을 통해 가지고 양도·양수를 하게 해 놔는데 타인 간에 양도·양수를 했는데 나는 몰랐다, 그래서 양수 받았으니까 이것을 나는 보호해 달라, 이게 가능한가요?

○**이종혁 위원** 그건 다양하게 일어나지. 실질적 상황에서는 다양하게 일어나요.

○**지식경제부지역경제정책관 김경수** 사적거래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도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동의를 하는 건데 또 하나 이걸……

○**이학재 위원** 저는 오히려 관리기관을 통한 양도·양수가 그런 어떤 원칙들이 지켜지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종혁 위원** 아니, 현실 쪽에 일어나는 실질적 거래행위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일응 생각하는 게 산업단지에 관리기관이 있고 등등 하니 까 이것이 불법적 행위로서 관리기관과 의사소통이 되어 가지고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법하지 못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계약한다, 이렇게 이제 상정을 하는 것인데 이미 그럴 때는 그것은 선의의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왜? 선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것이 불법적 행위라거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규제대상이라거나 이런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이런 소위 말하는 용지의 양도·양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의 사적인 계약으로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해 본 결과 이런 유가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 국민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번에 선의의 취득자일 경우에는 보호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정취지를 넣은 겁니다.

○**배은희 위원** 예,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이게 임대기간 만료 전 양도한 것 파는 거죠? 임대사업자로 처음에 분양 받았다가 이걸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형공장, 특히나 다른 산집시설 말고 아파트형공장 같은 데는 분양받고 가격이 오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적법하지 않게 양도한 경우에 굉장히 금전적 이익을 많이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그러니까 양도한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

○**이종혁 위원** 양도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그거 하는 부분에 현행 규정에서 그건 불법으로서 제재를 가하고 있죠, 처벌조항이 있으니까.

○**배은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처벌조항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처벌조항 가능한 것까지 합해서 이걸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임대사업자라도 양도를 바로 적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공단을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안 한 경우에 대해서도 면죄를 한꺼번에 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 안 되고 그다음에 양수인도……

○**이종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법을 볼 때 예를 들자면 그런 논리 때문에 이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 현행의 법 하에 소위 말하는 양도와 양수인의 수많은 거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행의 법에 의해 가지고는 양수인에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현재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요건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양수인이 그 해당 산업단지에 적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일 경우에, 이게 하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뭐냐면 그리고 이것이 양수인에게 선의의 취득일 경우에, 양도인을 보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걸.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배은희 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지금 양도인의 의중은 어떻든 선의적으로 그냥 계약해 버리는 걸 다 허용을 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종혁 위원** 어떻게 그걸……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받아서, 양수인은 선의죠. 그 사람한테 시세차익을 남기고 그냥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항이 통과가 되면.

○**이종혁 위원** 아니, 그건 양도인의 경우죠. 양도인의 경우에 그런 불법적 행위를 하는 건……

○**배은희 위원** 아니, 양수인도 이 법이 있는 걸, 아파트형공장 같은 걸 함부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걸 대개가 다 압니다. 거의 다 알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면…… 아니, 채권자가 자기가 그것의 채권자인데,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채권자의 권리로서 그걸 인수 받았을 때도 해 줘야죠, 사실은. 그것을 양수인을 보호한다면, 양수인의 입장이라면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는 조항을 빼야 되고 그리고 양도인이 이걸 불법적으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다른 조항까지 좀 한꺼번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지 않자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현황파악을 좀 하고 논의를 하시자는 거죠.

○이명규 위원 지경부 어때요?

○지식경제부지역경제정책관 김경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것은 임대공장을 양도자가 팔 때는 관리기관에 임대공장을 다시 반납을 하는 거죠. 파는 걸 되파는 겁니다. 되팔 때 시세차익을 주는 게 아니고 원가에 이자비용 정도만 이렇게 주고 관리기관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은 시세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고 싶은 거예요.

○배은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는 거죠. 적법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지역경제정책관 김경수 그런데 법적으로는 반납을 해서 관리공단이 그것을 또 다시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게 원칙인데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세차익을 좀 얻으려고, 프리미엄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요.

하자는 얘기고, 말자는 얘기고?

○지식경제부지역경제정책관 김경수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토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원래 예를 들면 조금 더 원칙을 고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토론하는 방향으로 하시지요.

○이명규 위원 그러면 이걸 보류합시다.

○이종혁 위원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아니, 이 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뭐냐면 이 부분은 양수인을 특별하게 보호하자라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법익을 위해서 이걸 개정하는 취지도 아닙니다. 그런 취지도 아니고, 지금 현재 현행법에 의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산업용지의 양도·양수에 관련돼 가지고는 일정의 제재규정과 규제조항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느냐 하면 아까 지식경제부에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소위 의도든 어떻든 다양한 거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실제적인 지금 현재 객관적 사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현재의 바로 뭐냐면 양도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처벌규정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선의로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결국 뭐냐면 이것을 일방적 잣대를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몇 가지의 선의의 취득이라는 요건과 그리고 원래의 이 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선의의 취득자는 예외적으로 그걸 좀 인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정 취지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이 바로 뭐냐면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 입법취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또 실생활에서는 친인척 관계라든지 혹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법이 규제하지 못하는 또 많은 내재된 여러 가지 것들, 의도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그럼 하지 말고 그건 좀 제한을 하고 가자, 그래서 저는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보류라든지 좀 더 더 심사를 하든지 하는 건, 그건 제가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 취지를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지금 문제되는 것이 구분으로 따지면 지금 6번까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2번만 문제되죠?

○배은희 위원 6번에도 하나……

○소위원장 노영민 6번에도 또 있습니까?

○배은희 위원 아니, 질의인데요.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라고 그랬는데 어느 경우에 입주계약이 해지가 되나요? 입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종혁 위원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라고 하는 그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부입지총괄과장 안성일 입지과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입지계약을 하고 나서 공장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추진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일정 기간 내에 그런 게 안 되면 입주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렇게 해지된 상황에서 양도했을 경우에는 입주한 계약에 계속 있는 데보다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같이 두자는……

○이종혁 위원 아니, 원래 이것을 할 때는 입주계약에 적합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해지가 된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입지총괄과장 안성일 형태는 같은데 양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일시키는……

○배은희 위원 이걸 동의하시는 거죠?

○지식경제부지역경제정책관 김경수 예.

○소위원장 노영민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명규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배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38조의2제4항에 관련해서 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종혁 의원님의 그 입법취지에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입법 기술적으로 이걸 지금 얘기 안 되거든요.

여기 보면 개정안에도 산업단지에 적합한, 해당 산업에 적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하기만 하면 아무나 양수 다 받아. 말이 안 되잖아요. 선의의 제3자라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문위원실도 말입니다. 우리 입법기술상 이런 법이 있습니까? ‘채권·채무 및 친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없는 자’, 우리 법에 이런 규정 써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수정안으로 내놔 가지고……

말해 봐요. 무슨 이해관계 없는 자가 그냥 이해관계가 없는 자라 하지 ‘채권·채무, 친족관계 등 이해관계 없는 자’, 대한민국 법에 어디 이해관계가 채권·채무, 친족관계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정의견 내놓으면 안 되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정신을 반영을 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이런 취지를 반영해서 다시 한번 법 기술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동의하신다고 그런다면 저는 아까 전문위원실의 이런 내용들을 이 법이 가지는 실제적 현상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되 만약에 그 선의의 피해자 보호규정을 악용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저는 딱 볼 때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딱이 규정이라고 봅니다. 이 법의 케이스에서 양도·양수인의 거래는, 친족 관계거나 아니면 채권·채무 관계가 있거나……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런 유의 것들이 아주 적합하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법 자구로 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이걸 쓸 수가 없다, 나는 이걸 자의적 그거라고 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정신과 그 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합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구와 문항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명규 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게 우리 모든…… 이영애 위원님 계시지만 법에 그

냥 ‘이해관계가 없는 자’ 이렇게 하지 ‘채권·채무 및 친족관계 등’ 이렇게 이해관계의 내용을 기술하는 법 형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없는 것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법사위 가면 얼마나 웃겠노, 무식한 지식경제위원들 하면서. 안 웃겠어요, 그래? 이런 식으로 수정의견을 내면 우리가 까딱하면 망신당한다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제3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다만 조문화를 다시 나중에 정리하라 이런 얘기에요.

○이종혁 위원 전문위원실,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십, 수백만 가지의 다양한 법에 예를 들자면 그 법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까? 나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종혁 위원 입법 취지가 명확하게 들어갔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의 일반적인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식경제위가 무식하다 등등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에 이런 류의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 정도 하십시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소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하지요.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명규 위원 이 항은 좋은 수정안을 내 보세요.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11시01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

를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인증 및 인증취소 사실의 관계기관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요지를 보시면 인증제품의 신뢰성 확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행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지 방법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인증취소제품에 대한 판매 정지 및 제품 회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한 경우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품의 판매 정지나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제품안전기본법을 저희 위원회에서 제정했습니다마는 제품안전기본법 9조의 안전성조사라든가 10조의 제품의 수거 등의 권고, 11조에 수거 등의 명령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또한 법무부에서는 제품의 회수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위로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인증취소제품의 인증유예기간 도입입니다.

인증을 취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26조에 따라서 검사·검정·시험·인증 등을 면제하는 개별법, 즉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라든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서도 6개월~2년의 인증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인증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전파법이라든가 전기통신제품의 경우는 6개월이고 대부분은 1년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

증받은 자가 인증 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양형기준의 상향 조정 및 회수명령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법 제42조 각호 위반 시의 벌칙을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증취소제품의 회수명령을 위반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하는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법 26조에 따른 면제 법령, 아까 말씀드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법률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양형 기준의 상향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인증제품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도 인증취소제품을 진열·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들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첫 번째 사항인 인증 및 인증취소 사실의 관계기관에 대한 통지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의견이고 다만 기술적인 문제로 통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통보하는 것을 추가하라는 자구수정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증취소제품에 대한 판매 정지 및 제품 회수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지난 2월 4일자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서 관련되는 제품의 회수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것을 별도로 추가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사항, 네 번째 사항, 다섯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저희들도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제가 좀 질의할게요.

이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2008년 국정감사 때 불량 가스밸브가 시중에 27만 개 유통된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심각한 침해가 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구체적 사항들을, 제도들을 들여다 보고 이 법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법무부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위다’ 이런 부분에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 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증기관이 예를 들자면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침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시험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 여부 그리고 제품 승인에 관한 일련의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KS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험들이 전부 다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KS제도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 그리고 KS 인증 그 자체로만 가지고도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제품에 KS 마크를 줄 리가 있겠나라고 하는 제도의 신뢰성이 제일 크게 작용하는 문제지요.

그래서 대개 이런 제품들이 KS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안전 전문기관으로부터의 모든 시험들이 다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이유로 KS 인증이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는 이유는 역시 제품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취소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현행법은 여기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버젓이 KS 인증을 그냥 그대로 단 채로 실제 물건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지적했던 게 소위 말하는 가스통, 영세 음식점이나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서민들 주거지역에 설치돼 있는 가스밸브들이 전부 다 KS 마크를 뒤집어쓴 채 버젓이 진열·판매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사서 달면 결국 거기에 심각한, 가스가 새 나오거나 해서 폭발·화재 위험이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 관련돼 가지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위다라고 하는 법무부의 견해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

권과 안전권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법무부에다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품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개정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솔직히 제품안전기본법을 들여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제가 개정안에 내놓은 두 번째 항이 만약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중적인 법을 둘 필요는 없다고 하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만 제품의 회수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위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그런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그런 불량제품으로 인해서 화재를 일으킨다거나 혹은 폭발로 인해서 국민이 생명을 잃는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누가 보호할 거냐, 나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원래가, 이 개정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한 경우—KS를 취소한 경우입니다—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건을 이렇게 명확하게 뒀고요. 그럴 때는 이런 제품을 당연히 판매 정지를 시키고 해당 제품의 회수를 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국가기관이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정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 제품안전기본법 9조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위원장 노영민** 한번 읽어 보세요.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기술표준정책국장 최형기** 기술표준정책국장 최형기입니다.

제품안전기본법 6조에 보면 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안전기본법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에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품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李玲愛 委員** 그런데 제품안전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제품 전체의 안전성을 검사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KS 인증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일종의 보증제도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제품안전기본법의 목적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KS를 취소했으면 당연히 수거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저는 이종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법에서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았다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제도니까, 그러면 사실은 KS 마크도 다 필요 없지요, 이 법으로 다 된다면.

이것은 국가에서 안전성을 인정해 주는 보증을 한 거니까 그것을 취소했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 줘야 국가가 책임이 있는 것이지, 제품안전기본법으로 다 해결이 된다면 아예 KS 마크 같은 것을 줄 필요도 없고 이 법에 따라서 안전성 검사를 해 가지고 위험하면 수거하라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의 제도가 있는 한은 그 제도에 따른 책임을 져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기술표준정책국장 최형기** 위원님 말씀에서 위험한 제품은 수거하는 게 맞는데요, 우선 저희들은 제품안전기본법이나 다른……

○**李玲愛 委員** 제품안전기본법하고 이것은 취지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종혁 위원** 이것은 산업표준화법이에요. 지금 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해서 KS 인증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증을 주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 제도의 신뢰성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전부 다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시 돌아가서 그 안전에 관한 부분을 들여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밸브, 그 당시 27만 개가 시중에 유통되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수거 안 하느냐, 현행법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영애 위원님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업표준화법, KS 인증과 관련해서 국가가 부여한 소위 말하는 제도적 혜택, 신뢰 그런 것들이 깨졌을 때의 원상복구 차원이다, 이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玲愛 委員** 법의 취지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니까 저 법에 그게 있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해 준

다는 것은……

○**이명규 위원** 그런데 왜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이종혁 위원님하고 두 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반대하는데?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기술표준정책국장 최형기** 예,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하는데 아마 당초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이렇게 했던 것은 제품을 회수하거나 판매 정지를 시키는 것은 하여튼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니까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일반론을 법무부에서 제시를 했으니까 이것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KS 제품 취소된 경우에 이리이러한 요건에 있을 때 회수하라는 문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일반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도 KS가 취소된 제품의 경우에도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까 이 조항으로도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판단이 선 것으로 일응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지금 이종혁 위원님하고 이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같이 중복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회수하는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명규 위원** 나중에 법사위 가면 어차피 우리 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을 보고 하니까 저도 의견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이 일반법이라면 산업표준화법은 약간의 특별법적인 성격이 있어요. 일반 제품과 KS 제품에 어떤 이런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 내지는 특수한 KS 제품에 대해서 제품안전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이영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것은 맞지 않고, 법무부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종혁 위원님 말씀처럼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라고 요건을 딱 규정해 놓았잖아요. 이게 왜 과도한 제한입니까?

인명의 피해나 화재 발생한다는데 이게 과도한 제한이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규제

를 푼다푼다 하지만 이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순서를 바꾸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遞信窓口業務의委託에관한法律 전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11시18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30항 정부가 제출한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정부에서 제출한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째,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체신창구업무’를 ‘우체국창구업무’로 이렇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은 안 해요?

○이명규 위원 뒤로 돌렸습니다.

좀 이따가 하자고요.

○김재균 위원 왜?

○이명규 위원 다른 것을 하나도 못 하나까……

○이학재 위원 이따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김재균 위원 이거 먼저 처리하고 합시다.

○소위원장 노영민 43번까지 몇 개 남지 않았거든요. 이게 몇 개 안 됩니다. 이거 하고 할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계속하겠습니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만 변경하고 있고 조문 내용에 있어서 체신관서 또는 체신사업이라는 용어

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면 체신사업을 우정사업으로 체신관서는 우체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우체국 창구 업무의 정의 및 위탁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을 그대로 한자를 한글로만 바꾸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체국 예금 및 우체국 보험 업무의 경우에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또 이를 위탁할 때는 업무 수행 능력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및 계약 기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수탁을 희망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은 일률적으로 운용될 경우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자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바꾸어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며 위탁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부칙의 적용 예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칙을 좀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위탁 업무의 취급 및 위탁 업무 종사자 규정의 명확화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항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제목과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고 다른 규정과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구정리 차원에서 조제목과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전부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거 뭐……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용어 정리……

○**소위원장 노영민** 용어 정리 수준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19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이 법은 정부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법령용어를 순화하는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또한 지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된 에너지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에너지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지경부장관 소속 에너지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당연직 위원을 고위 공무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관급 공무원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당초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원전 방폐장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 추천 위원이 5명 이상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440개 되는 정부 위원회 중에서 44개 위원회가 시민단체 추천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

니다.

그런데 대부분 추천 자격만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1명 이상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명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정부가 5명 이상으로 해왔는데 뭘 또 1명 이상으로 바뀔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입법조사관 심정희** 현행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현행이 5명이고요……

입법조사관입니다.

이번에 사실 알법으로 들어온 거라서 내용 개정은 없었고요,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 2개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의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정되어 오지 않은 조항이잖아.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정부도 수정안을 내고 하는데 뭐 덧붙이려고 해?

○**배은희 위원** 왜 1명으로 했어요?

○**입법조사관 심정희** 우선은 저희가 지금 25명 위원 중에 5명이 시민단체 추천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좀 배경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부안 그 사건 때문에 많이 늘린 것인데 그래서 지금 다른 정부위원회 상황을 보았는데, 이렇게 비율이 높은 위원회는 사실상 에너지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어서 낮추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해서 검토해 본 것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런데 25명 중에서 5명이면 많은 것도 아니네.

○**김재균 위원** 1명 이상으로 이렇게 고칠 필요까지 있어요?

5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하지요.

○**소위원장 노영민** 에너지가 일반 국민들 생활에 밀접한 거니까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 거예요.

○**배은희 위원** 정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저희들은 이게 단 순히 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오토매틱리(automatically) 변화하는 규정만 봤기 때문에 차마, 정부가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는 것도 사실 위원회 위상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다가 장관으로 내려오고 국장급으로 낮추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크게 의미 부여를 솔직히 생각을 깊이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던 것이 대통령이 위원장이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일용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장관급 위원장으로 갔기 때문에 시민단체 위원이 5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 또 다른 여타 위원회하고도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어떤 면에서는 일깨워 주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의견으로 동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논리가 참 이상하네. 대통령이 위원장이면 시민단체 추천이 많아도 되고 장관이 위원장이면 시민단체 추천이 줄어야 된다는 논리가 이상하지.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해 가지고 모든 국가 에너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녹색성장 기본법이 되어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그냥 에너지계획으로 명칭도 바뀌고 이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에 우리가 보고하는 기능만 여기에 부여되었습니다.

○배은희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위원회 멤버 구성은 전부 당연직 위원이 관계부처로 해서 5명이 되었고요, 위촉위원이 18명, 그래서 총 2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추천 위원 중에서는 시민단체 추천 위원 5명 이상 외에는 다른 규정은 없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 외에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배은희 위원 다른 규정은 없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시민단체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5명 이상으로 우선 둥시다.

25명 가운데 5명 이상은 되어야지. 1명 이상은 너무……

○소위원장 노영민 바뀌서 실익도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실익이 있겠어, 이거 바꾼다고.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예, 저희들은 다른 타법하고의 균형을 보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정부 측에서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결정하시지요. 원안대로 가서도 상관 없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배은희 위원 당연직 위원만 바꾸는 것으로?

○소위원장 노영민 이것도 바꿀 필요도 없어.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이것도 그냥 놔두셔도……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위원장님, 추천 위원 5명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의견대로 그냥 두기로 하겠는데 당연직 위원이 너무 격하가 되어 가지고 장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으로 좀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소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진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3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11시28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36항 조진래 의원, 성윤환 의원, 최철국 의원, 조경태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석

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했다가 정부안의 내용 중에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관련된 사항이 국토해양위원회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를 연기했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가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먼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경태 의원안에서는 석유수출입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시행령에 내수판매 계획량의 45일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법률로 끌어올려 가지고 15일분을 상한으로 명시를 함으로써 시장진입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08년 말에 등록기준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60일분을 45일분으로 완화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자 증가현상도 없었고 또한 전체 석유사업자 중 수출입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8%에 불과하여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현행 제도가 민간 석유사업자에게도 비축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정부안에서는 석유판매업 등록권한 중 일부를 지방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권한 중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행령으로도 지자체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데 법률로 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자구수정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정부안에서는 신고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수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즉, 등록대상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에 상응하는 신고대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수단으로서 영업장폐쇄명령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자구수정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정부안에서는 편법적인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명의만을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계속 영업하는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6개월 동안 종전 영업시설을 이용한 등록 또는 신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영업시설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과징금 체납에 대한 행정제재 개선은 성윤환 의원님 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검사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요건을 명령·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요건은 오히려 요건을 강화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모두에서 말씀드린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관련 거짓서류의 발급금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만 빼고서 나머지 것을 여기서 심사해서 의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이 비교에 정리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포상금 지급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형식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최철국 의원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부터 소위에 계류됐던 법안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사업자에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에 따른 판매량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연구결과가 없는 관계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고, 최근에 연구용역을 정부 측에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정부입장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들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첫 번째, 조경태 의원님이 제기하신 석유수출입업 등록 요건을 15일로 낮추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1년 정도 전에 우리가 등록 비축 의무요건을 60일에서 45일로 낮췄고 LPG는 45일에서 30일로 낮춘 상태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국가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낮췄는데 아직 그 결과가, 시행 1년 남짓한 이 기간에 다시 또 요건을 대폭 낮춰서 15일로 비축의무를 줄이는 것은 너무 과도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현재 45일, 30일로 낮춘 그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본 연후에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석유판매업의 등록권한 중 일부를 지방이양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말씀대로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을 법제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신고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수단 보완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자구수정 외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편법적인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 제한과 관련해서도 수석전문위원이 제안하신 '일부'라는 표현을 자구수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로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 자구수정한 상태로 동의합니다.

다섯 번째, 과징금 체납에 대한 행정제재 개선 역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장에 대한 출입·검사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도 정부안의 자구수정으로, 현재는 위법 사실이 인정된 경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자구수정안을 받아들이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관련 거짓 서류의 발급 금지는 지금 검토하신 대로 국토해양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해서 위원회 안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역시 조진래 의원안을 수용하고, 수석전문위원의 자구수정을 전제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아홉 번째 사항으로 최철국 의원님이 지적하신 보정계수를 이용한 판매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정부가 용역을 한 결과가 지난 3월에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보정계수 도입 실익이 낮다, 따라서 보정계수 도입의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지금 도입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캐나다, 벨기에 그리고 미국 하와이 지역 이렇게 세 군데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 도입한 나라들도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한 5년 이상의 연구조사기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지역을 넓혀서 연구를 진행한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6항의 사업장에 대한 출입·검사 요건 완화, 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합리적 의심'의 요건 추가로 해서 오히려 요건을 강화하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뭐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정부 명령에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라는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표현이 좀 모호하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이런 식으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것 빼 버리고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원래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은 형사소송법에서 법관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때 요건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쓰던 용어거든요. 입법취지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런데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주

관적인 것 아니에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다는 뜻 같은데, 내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이것은 판단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출입할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원래 법 취지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유사석유제품이나 이런……

○**소위원장 노영민** 그렇지요? 모든 데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현재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취지는 길거리 판매라든지 이런, 정식 주유소 등록을 받은 데는 우리가 출입할 권한이 있는데 그냥 유사석유제품을 길거리에서 판매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할 경우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주유소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길거리 차량 판매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겁니다.

오히려 조사 필요성이 더 높은 지역이 해당됩니다. 모든 주유소에 들어갈 권한이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4번 관련해서 내가 하나 여쭙 봅시다.

편법적 석유정제업 등록·신고 제한, 이게 명의변경해서 문제가 있는 업장의 시설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막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런데 수정의견으로 정부가 내놓은 것은 ‘전부 또는 일부’,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에는 너무 과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건데요. 정지명령을 내리고 그것의 일부 시설, 별로 중요치 않은 일부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또 편법적인 정제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도하니까 적어도 중요한 시설을, 그것을 다시 사는 경우에는……

○**이종혁 위원** 시행령에다 정해 가지고, ‘중요한 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일부 시설은 이용하도록……

○**이종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명규 위원** 5번에 대한 것 물겠습니다.

과징금 체납에 대한 행정제재 개선에 대해서 지경부에서 동의합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 나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대신에 과징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과징금을 내는데 이 과징금을 내지 않을 때는 그냥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게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징금을 내지 않을 때는 선택적으로 다시금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만들어서 다시금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은 사업정지처분 받는다 그래요. 장사가 잘되니까 과징금 내고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사는 잘되는데 과징금을 안 내면 국세,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하는 동안은 아무 문제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될 때는 말이지요, 이게 일종의 계속범입니다. 체납처분을 해서 그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 어떤 불법적인 영업이나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이해합니다.

○**이명규 위원** 이것은 과징금을 내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통상 많아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과징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단순히 체납처분의 예에만 따른다면 오히려 신속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강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못 박는 것 문제가 있으니까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

지 않는 경우에 2개를 선택적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2개가 선택적이거든. 그렇지요? 영업정지하고 과징금 부과하고 2개가 선택적인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때는 바로 체납처분 갈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체납처분을 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하거나 선택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

이것 실제로 말입니다, 물론 석유 여기에 관련된 거지만 다른 법률에도 이런 식으로 사업정지처분하는 걸 없애 버리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李玲愛 委員** 이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이종혁 위원** 나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위원님, 정지처분으로 돼 있는 것을 체납처분의 예로 한 게, 저희들이 행정을 운영해 보면서 발의한 그런 개정안이 아니고 성 의원님이 했습니다마는 정부에 제안한 건데……

○**이명규 위원** 당연히 정부가 이런 걸 걸러야지, 이런 점을 지적해야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과징금하고 정지명령 내리고 이런 예가 이것 말고도 다른 유사사례가 많은데 이것을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바로 정지를 시키는 것보다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절차를 일률적으로 수정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그쪽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제안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명규 위원** 석유 입법 문제가 아니고 많은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말이지요, 지식경제부는 현업 부처인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셔야지요. 당연히 영업범이고 계속범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계속범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형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의 행위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듯이 정지처분에 같음해서 과징금으로 할 때는 과징금으로 해 달라고 당사자가 요구를 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요구해 놓고 과징금 안 내고 체납처분해라 이러면, 그러면서 계속 불법적인 상태에서 영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상당히 문제가 생겼어요.

○**이종혁 위원** 법조문의 실행력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원래가 더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규 위원** 나중에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로 문제가 번지면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어.

○**이종혁 위원** 아니, 사업정지처분하거나 과징금은 좋은데 그것을 체납하는데다가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그런다면 그것은 내가 보건대……

○**李玲愛 委員** 행정력의 낭비네.

○**이종혁 위원** 낭비지. 그리고 원래 법조문의 실행력을 소멸하게 하는 거고.

○**이명규 위원** 이 법만 문제가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지식경제부가 이 점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의 이 조항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조항도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컨대 노래방 생각해 봐요. 노래방에서 술 팔았다 그러면 영업정지 나갈 것 아니에요?

차관님!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이명규 위원** 노래방 생각해 봐요. 간단하게 노래방에서, 석유라 그러는데 이것 말고 일반적인 경우에 노래방에 영업정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사 잘되니까 과징금 낼게.’ 그럴 것 아니에요? 과징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내고 계속 있으면 노래방 체납 들어가나? 말이 돼요, 그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현행 규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이명규 위원** 현행 규정 봤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요. 현행 규정은 사업정지처분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정지처분을 일단 내리고……

○**이명규 위원** 아니, 내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극히 제한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포괄적으로, 바로 과징금 내지 않는 경우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맞습니다.

○**이명규 위원** 아주 예외적으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하는 것을 과징금 내지 않으면 무조건 포괄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자는 그 뜻인데 그것은 내가 알겠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좋은데, 그냥 체납처분으로 가려고만 하지 마라 이 얘가지, 내 얘기는. 내 의도는 뭐냐면 개정안에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의가 없다 이거야. 그것을 갖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나도 이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만 여기에서 ‘징수한다.’로 끝날 게 아니고 ‘징수하거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나를 더 넣어 줘라 이런 얘가지. 지금 성윤환 의원의 안, 그리고 지경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과징금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아주 한정적으로 해 놔는데 이것을 아주 포괄적으로 과징금을 안 내면 무조건 다 체납처분한다는 것으로, 넓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에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것 넓히는 것 나는 동의한다 이거야. 동의하는데 이것만 넓히는 데 동의하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다시금 사업정지처분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으라 이 얘가지.

○**소위원장 노영민** 무슨 말씀인지 알았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이종혁 위원** 내가 한 가지만 또 질의해 봅시다.

원 법조문에 보면 ‘13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위에 휴업 폐업 이런 건 알겠는데, 내가 묻는 질의의 취지는 뭐냐면 사업정지처분에 대한 이런 제재를 내리는 실익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실익이 더 높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당초 취지는 체납을 했다고 해서 사업정지처분이 바로 들어가면 없어짐으로써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러면 이명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지.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납처분과 선택적으로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으

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규 위원** 규정을 어떻게 하나 더 넣으면…… 자구정리는 내가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이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법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법에 처벌규정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고치려면 금방 내가 얘기한 것처럼 고쳐야지 성 의원님 개정안처럼 고치면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그것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다른 부처하고 어떤, 특히 환경 이런 쪽으로 가면 많아요. 그런 쪽의 개정을 할 때 문제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그 점을 지적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내지 제34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이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3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11시55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및 제38항 김정훈 의원과 노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정훈 의원안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이 안전관리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결하고 판매사업자 등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사업자가 가스 사용자에게 시설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의무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사업자의 안전점검과 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이중적으로 사후절차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영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현행 임의규정을 개선해서 조례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은 임의적·재량적 운영 소지를 방지하고 허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 형식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인 집행사항이나 기술적인 사항은 집행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시도지사가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는 것으로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들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첫 번째, 김정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설개선절차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 권고 의무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 공급자가 시도지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체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가스안전공사가 전기검사를 통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스안전공사가 하는 검사의 의무를 또 수요자의 시설과 관련된 것을 가스 공급자에게 이중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그런 기술적인 체제상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동의 문제가 우리 김정훈 의원님이 있었을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스공급시설을 점검하는 가스 공급자와 수요시설을 공급하는 가스안전공사와의 유기적인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위 규정 고시를 통해서 반영해서 김정훈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영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을,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이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좀 투명하게 하고 대외 공표하자는 그런 취지의 제안에 대해

서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를 조례로 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의회의 통과 이런 신속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조례보다는 시도의 고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효과는 대외적으로 공표해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그런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까.

○김재균 위원 고시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허가 기준에 대한 것은 사실 이게 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게…… 이게 시도의 입장입니다. 마는, 시도의 의무고 권한입니다. 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시도지사가 그냥 하는데 현재는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고시 정도의……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자 그 말인데……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시도에 보면 이것과 유사한 허가사항들이 관례상 조례보다는 고시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조례로 해도 뭐, 그런데 시도지사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조례로 한다고 부담 느끼겠어요? 대개 이런 허가 기준이 조례로도 돼 있는 게 있고 고시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이원화가 돼 있는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기준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역의 민원하고 직결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도지사 입장에서도 고시보다는 조례로 하는 것을 더 바랄 거예요.

○입법조사관 심정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제가 있는 고시들의 세부 규정을 봤는데요, 도로와의 거리 몇m, 그리고 어떠한 사무실을 두고 사무실 면적 몇㎡ 이상을 두라는 그런 것인데 너무 세부적·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사실 조례의 법률과 같은 추상적인 그런—형식적인 면에서요—측면을 고려한다면 고시 형식이 이번 케이스

에서는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역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각 지역에서 조금씩 다르게 정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례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혁 위원**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조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어때요?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저희들 의견은 좀 기술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고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마는 조례로 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될 겁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별 차이는 없을 거야.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예.

○**김재균 위원** 이런 게 민원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로 이 문제를 걸러 줘야지요. 민원사항이 많아.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네, 조례로 하지요 뭐.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8항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2시03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정부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요한 내용으로서 발전용가스 도입·판매 부문에 경쟁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소위에 계속 계류되었던 법입니다마는 도시가스사업의 종류를 현행 도매사업·일반도시가스사업 외에 발전용가스사업을 신설해서 발전용가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발전용가스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도입가격 또는 소비자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이 주된 쟁점사항이 되

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전용가스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 소유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등에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 이 법에다 담는다면 발전용가스사업 외에 상위 업종인 가스도매사업도 함께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가스공급시설 공동 이용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학재 위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해 주실 것을 저한테 의견을 전하시고 가셨다는 말씀 드립시다.

○**이종혁 위원** 그동안 이 법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상임위를 통해서도 충분히 주장들이 다 나왔고 저는 충분히 숙성되었다고 보아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 취지가 그동안에 우리가 독점적 공급에 따른 여러 가지 국가경쟁력 약화, 그리고 도입 단가의 상승, 그리고 또 그것이 줄 수 있는 국민들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지대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논리라고 하는 것들도 제가 죽 한번 읽어 봤는데, 저는 그렇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독점적 위치가 깨어지면 오히려 우리가 수입하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외국의 이런 소위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들, 도입가격의 비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제는 이렇게 좀 경쟁체제를,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하는 게 국가의 경쟁력에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 개정안의 취지가 그냥 한꺼번에 소위 가스 도입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무제한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발전사업자의 발전용도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노영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KDI가 용역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김재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4월 달에 생산국이 소수일 때 되레 도입가격 상승을 유발한다 이런 결과를 냈어요. 저번 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그게 꼭 반대만 해야 될 것이냐 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4월 달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신중론을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신중하게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심의를 좀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DI 용역보고서의 원문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 드리는데 이것은 추호의 저거도 없이 KDI 보고서의 결론은 경쟁을, 도입을 하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중에 극히 한 규정의 이런 내용을 지난번에 문화일보에 보도를 해서 그렇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것은 설명을 했고 KDI도 인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왜 꼭 지금 통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그리고 경기가 지금 상당히 회복세에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위 가스를 도입하는 시장이 현재는 바이어스 마켓인데 이게 셀러스 마켓으로 전환 될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 경쟁을 하는 물량이 3000만t 중에서 불과 200만t입니다. 200만t에 대한 도입 시점을, 지금 경쟁을 도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도입 시기를 상당히 놓친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200만t도 지금 들어오는 시기는 2015년이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李玲愛 委員 끝나셨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부 참고용으로 했는데, 제가 설명 올리고자 하는 것은 도표를 좀 설명 올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올해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장기 천연가스 수요 확보 전망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2012년에 수요가 3300만t이고 확보 270만t이 가스공사 계약 건으로, 기계약이 250만t이고요. 그다음에 스팟물량 해서 직수입하는 물량이 돼 있고, 러시아 PNG 도입 물량이 2015년부터 돼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선진화 물량이 지금 해야지만, 2015년에 200만t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t이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저희들이 확보 필요한 물량이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소위원장 노영민 됐고요, 그건 다 알고 있고.

최근에 최철국 위원님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의뢰했어요. 그래서 발전용가스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검토라고 해 가지고 입법조사처에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에서 최종 결론이 뭐냐 하면 유보하라는 겁니다. 너무 이견이 팽팽하고 또 여기 결과를 보면 이쪽, 소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

하여간 그런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넘기세요.

○배은희 위원 이영애 위원님 의견을 한번……

○李玲愛 委員 의견만……

○소위원장 노영민 예, 의견 하시고……

○李玲愛 委員 저는 대원칙으로 봐서, 개별적인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유주의경제 체제에서는 경쟁이 원칙이다, 시장에 맡겨야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는 거지 독점구조로 가면 반드시 시장이 왜곡되고 가격이 합리적으로 설정이 안 된다, 그래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원칙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혁 위원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영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선 이 가스산업 경쟁 도입에 관련된 게 강산이 한 번 변할 시간 동안에 논의가 되어 왔던 겁니다. 이번 4월 국회에 이게 꼭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국익 차원으로 보면, 최근 가스시장이 바이어스 마켓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이런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고요.

그리고 미국 영국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경쟁 도입 이후에 가스요금이 14%에서 뽁게는 42%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런 객관적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입법조사처에 최철국 위원님이 의뢰하신 그 자료를 말씀합니다마는 국제에너지기구, IEA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KDI의 보고서도 원 전체 내용의 결론은 뭐냐 하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차원이나 국익적 차원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스공사를 배제시키자는 게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는 독점적인 공급처로 주니까 여러 가지 방만한 경영도 나오고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나라든지 간에 시장에 서로 간 경쟁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더 많은 세심한 노력, 전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정한 물량을 적정한 가격에 가져오는 그런 노력이 수반되는데 지금 가스공사는 수십 년 동안에, 우리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스공사 사장님의 입에서부터도 지금 현재 가스공사의 소위 방만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경쟁에서 가스공사가 이기게 되면, 다시 말하면 싸게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가스공사 물건을 쓰는 겁니다, 이 개정 취지가…… 그래서 이 부분은 4월 국회에……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위원장님, 한 말씀만……

○배은희 위원 저도 한번……

○소위원장 노영민 가만히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배은희 위원님!

○배은희 위원 저도 이종혁 위원님, 이영애 위

원님 의견에 동감이고 이것을 너무 오래 끄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저희가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소위원장 노영민 글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혁 위원 잠깐, 얘기를 들어 보시지요.

○배은희 위원 저희가 지금 가스 가격은 마켓이 셀러스 마켓이나 바이어스 마켓이냐가 가장 좌우한다는 것은 어느 보고서를 보더라도 일치된 의견입니다.

셀러스 마켓일 때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주도가 되든지 조절해서 셀러스 마켓에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바이어스 마켓일 때는 우리가 이익을 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바이어스 마켓이 왔을 때 우리가 경쟁을 줘서 시장경제에서 가스 도입을 싸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저는 오픈해야 된다고 봅니다. 셀러스 마켓에서는 우리가 안에서 단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해 놓으면 바이어스 마켓이 왔을 때 우리가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가 장기도입이거든요. 장기도입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이어스 마켓이 한번 가면 다시 오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 기회에 우리가 논의해서 분명하지 않고 서로 의견이 팽팽한 것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을 가져간다면 우리가 의무를 못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바이어스 마켓이 왔을 때에는……

우리가 이 방법으로 갔을 때 이익이 되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로 해서 이것을 이번에 빨리 저희가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원래 KDI 보고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런데 KDI 보고서가 작년 12월에 나왔지요,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번 4월 달.

○소위원장 노영민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배포한 게 최근입니다, 작년 12월에 나온 보고서를. 우리가 KDI 보고서가 나오면 공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배포를 최근에 했거든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 한번 우리가 짚어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종혁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노영민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리고 KDI 보고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기현 간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이것을 논의 수준으로만 한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김기현 간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게 상정 계획돼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 정도로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KDI 보고서에 대한 평가도 다르고 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최근에 이게 나왔어요. 입법조사처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낸 자료인데 이런 것에 대한 분석 없이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KDI 보고서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 그리고 최근 가스산업 경쟁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서로가 달라요, 입장이. 너무 달라, 극과 극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수없이 설명을 드렸습시다마는 지금 우리가 가스산업 전반적으로 경쟁 도입하겠다는 그 의견에 대한 그런 보고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가스산업의 경쟁 도입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3000만t 중에서 2800만t을 도입하는 가스공사를, 2800만t은 고유적인 독점권·도입권은 다 인정을 하고 다만 200만t만 시범적으로 민간기업하고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스산업 경쟁 도입의 실익을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물론 위원장님께서 논의해 주시고요. 이것은 배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내년이…… 지금 끝나가는 바이어스 마켓을 우리가 활용해서 200만t만……

○소위원장 노영민 그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너무 차관님 주장만……

○이종혁 위원 아니,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논의하시고……

○소위원장 노영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에 KDI 보고서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공청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이종혁 위원 아니, 그것은……

○소위원장 노영민 전에 했더니, 전에 회의에서.

○이종혁 위원 아니, 보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제가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소위원장 노영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KDI 보고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공청회에서 그것을 논의하기로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회의에서 결정했지요.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KDI 보고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저는 아직 KDI 요약본밖에 못 봤는데 너무 늦게 왔어. 이게 작년 12월 달에 보고서가 나왔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식경제부에너지산업정책관 이관섭 원래 용역기간이 12월이었는데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은 4월 중순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아, 용역 계약이 12월이었는데 보고서가 나온 것은 4월이었다?

○지식경제부에너지산업정책관 이관섭 예.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용역이 작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이었으면 용역 내용은 다 나왔겠지요.

○배은희 위원 우리가 공청회하기로 하지는 않았지요, 그것을 검토한다 했지요. 저는 그것은 확실하게……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공청회를 통해서 하기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은희 위원 공청회를 몇 번을 했는데 또 공청회를 해요?

○이종혁 위원 그것도 명확하지 않지만 또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이것이 십수 년 동안에 논의가 되면서……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이 부분은……

○이종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 보세요.

○소위원장 노영민 이미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돼 있어요.

○이종혁 위원 그리고 그 입법조사처의 내용도……

제 얘기를 잠깐 들어 보십시오.

여야 간사 위원님들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KDI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그리고 또 배은희 위원님 말씀은, 저는 거기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청회를 꼭 요식적 행위로서 해야 한다 이런 결정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그것도 명확하지 않지만요—우리가 법을 제·개정하는 것들에 대한 가장 주요 목적은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가 경쟁력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이익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아까 바이어스 마켓이 도래했다고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2015년에 그것도 기껏 200만t의 물량 또 전체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국가가, 우리 법안소위가 이런 것들을 시기에 맞춰가지고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10년 이상 끌어왔던 또 해 봐야 똑같은 논의들을 계속하는 게 과연 국가나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는, 이왕 점심시간도 너무 늦었고 하나까요. 김기현 간사가 어떤 유의 합의를 얘기한 건지에 대한 사항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은희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 소위원장 노영민 이 부분은 그냥 계속 심사를 하기로 하고……
- 이종혁 위원 아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 소위원장 노영민 6월 달……
- 이종혁 위원 이것은 제가 보는데……
- 김재균 위원 너무 고집피우지 말고, 4월 달에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검토해야지.
- 소위원장 노영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쪽지 받은 것만 해도, 이것은 최철국 위원님이 저한테 보낸 건데 ‘별도 조사한 결과 경쟁 도입이 국내 도입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수의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보류해 달라’……

- 배은희 위원 우리 간사님 얘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 이종혁 위원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영국, 스페인의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소위원장 노영민 제가 김기현 위원님하고는 어제 얘기를 했어요.

○배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고 하계 속개해서 하시지요.

○이종혁 위원 가스요금이 얼마나 지금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있는테요.

이 부분은 김기현 간사님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오후에 속개를 해 주십시오.

- 소위원장 노영민 왜 나가시려고?
- 이종혁 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그러면 안 돼.
- 이종혁 위원 여기서 이것을 보류하고 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 하기로 하고 계속하셔야 돼. 오후에는……

○이종혁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오후로 돌려 주십시오.

○소위원장 노영민 오후로 돌리고, 그러면 이것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오후에 계속……

○이종혁 위원 속개해서 오후에 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노영민 예.

4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혁 의원 대표발의)

4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시24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 이종혁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첫째, 이종혁 의원안에서는 광해방지 의무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체계적으로 봤을 때 제10조는 광해방지 책임 및 그에 대한 비용 부담에 관한 기본 원칙을 천명한 조항이고 나머지 조항은 이를 구체화하는 조문인 점과 제10조는 강행 규정이고 제24조는 임의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부담금 납부 절차를 전년도 12월 31일에서 당해연도 1월 15일로 개정하고 있는데 특

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광해관리공단의 해외사업을 추가하는 문제입니다.

공단의 사업에 “해외에서의 광해방지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에서 몇 분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해외사업을 허용하되 사업수익·지출 등 예산에 대한 엄격한 국회 심사가 필요하고 또한 국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해외 환경오염방지사업’은 환경부 소속 업무와의 중복 우려 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고, 다만 해외 광해방지사업은 해외시장 선점이라든가 자원개발과의 연계 등의 적극적인 측면과 해외사업을 위한 재원 등 재정 부담 및 강원랜드 배당금 지출의 합목적성 여부 등의 소극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지난 08년 11월 달에 제출된 정부 안에서는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마는 위원회 폐지에 대한 이유와 변경 필요성에 대한 기준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 그때 당시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시행령에 설치근거가 되어 있던 것을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근거를 법률로 명시하도록 의원입법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지난 17대 말에 개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부 측에서 그 이후에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좀 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첫 번째, 광해방지의무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일부 규정은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 말씀대로 당초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0조2항 사항과 24조1항의 규정 사

항이 10조2항의 사항은 임의 규정으로 선언적인 규정이고 이것에 대한 10조2항을 받은 개별적인 사항이 지금 24조1항 외에도 22조, 25조 뭐 여러 가지 의무 부담금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굳이, 10조2항은 선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을 현재대로 존치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담금 납부기간을 12월 31일…… 이게 부담금 통지기간하고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회계연도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1월 15까지로 변경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의에 동의합니다.

세 번째, 광해관리공단의 해외사업 추가와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이 무분별한 해외사업이 되지 않도록 공단의 예산심의 시 국회에서 충분히 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해외환경오염방지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는 해외환경오염방지사업 업무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환경부 의견과 같이 저희들도 삭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해외 방지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공단에서 직접 재정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의 사업들이 대개 해외에서 일반 자원개발과 같이 사업비를 제시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이 사업 재정을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정부안을 제출한 이유는 이 위원회가 위원장이 에너지자원실장이고 위원이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에너지자원실장으로 되어 있는 이 위원회는 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실무레벨이기 때문에 실무레벨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국장이 위원으로 구성되고 실장이 위원장인 이 위원회를 굳이 법에다가 근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위원회는 폐지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안을 제출한 이유입니다.

나머지 징수 관련되는 사항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정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고맙습니다.

○배은희 위원 질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 없습니까?

○李玲愛 委員 예.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광해관리공단 해외사업에서 ‘광해방지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해방지사업이 환경오염방지사업하고 뭐가 다르지요? 광해방지사업 그 자체가 환경오염방지사업이고……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광해방지사업이 환경오염방지사업이고 환경오염방지사업은 광해방지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소위원장 노영민 환경오염방지사업은 큰 개념이고 광해방지사업은 그 안에, 내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잖아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소위원장 노영민 그런데 광해관리공단이 국내에서 할 사업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지금 예산 가지고 수십 년을 해도 지금 벌어져 있는 것도 못 하는 정도 아닙니까. 아시지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소위원장 노영민 앞으로 수십 년 가도, 지금 해마다 정부가 주는 예산 가지고 해도 국내 사업도 다 못 해.

○배은희 위원 해외사업은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이종혁 위원 해외에서는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고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런데 해외사업은 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소위원장 노영민 우리나라 광해관리공단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위원장님, 광해공단이 지금 대표적으로 베트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를 말씀드리면, 베트남에서 광해방지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광해공단과 석탄공사가 같이 진출을 해 가지고 광해방지와 석탄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해방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 광해방지 하는, 국민의 편익 사업을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광해방지 편익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 용역을 수행하고 돈을 번다든지 이런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광해방지 해외 시장이 무지 큰 시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약 62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대개 1개 지역의 광해방지사업 예산이 한 3억 정도 전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개발, 가난한 후진국에도 이 광해방지를 위한 예산은 이미 다 선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사 결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려하는, 뭐 강원랜드의 자금을 가지고 돌려서 한다는 이런 우려도 실질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저는 거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해외로부터 돈을 벌어들여 오는 우리의 수익사업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런데 광해관리공단이 기본적으로 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의 회사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게 공단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소위원장 노영민 원래 명칭이 광해방지사업단이에요. 광해 방지에 전념하기 위한 사업단 회사를 다른 데는 다 ‘공단’ 이렇게 이름이 그럴듯한데 ‘사업단’이라니까 대외적으로 위상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난 17대 말에 ‘공단’이라고 이름을 변경해 준 것이지 사실 이것은 국내의 폐광 그것에 대한 환경을 강원랜드 같은 데서 돈을 벌어서 이것을 해 가지고 국내 폐광산에 대한 복구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단이에요, 이게.

회사 구성을 한번 보세요. 이 회사는 애초부터

설립 목적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에요. 이게 목적을 추가하자는 건데 이 회사의 설립이 그렇게 설립된 회사라고요. 보면 그 회사에 경영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자리조차 없어요, 이 회사는.

○**이종혁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광해방지사업에 관련된 해외시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나고……

○**소위원장 노영민** 이 회사에서 해외시장 가서 뭘 할 사람이 누가 있는냐고.

○**이종혁 위원** 아니, 베트남이나……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사람 새로 써야지.

○**이종혁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 광해관리공단에 그런 요청들이 들어와요. 요청들이 들어오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력으로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화를 우리가 가득 채어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의 지적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이지만 국가도 이제는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될 시대고 그래서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CEO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쪼록 위원장님께서 해외시장에서 외화를 좀 가득할 수 있는……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광해관리공단에 소위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국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데 전문가가 누구예요? 이 회사에 전문가 있어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위원장님, 지금 광해공단……

○**소위원장 노영민** 이사장은 뭐 하던 사람이예요? 이사장을 비롯해서 각 지역 본부장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고?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광해공단에 있는 사람들의 해외 역량이나 맨 파워를 보고 공단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광해공단의 처음 취지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있더라도 누군가는 지금 광해 방지와 관련된 해외 사업들과 이것에 대한 각국 간에 기술경쟁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해관리공단이 만약에 아니라면 누군가는 광해 방지와 같은 해외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 수준을 국가 간으로 비교하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광물찌꺼기 무해화 기술이 세계 수준의 95%, 기술 수준이 다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섬유의 기반 칩하와 관련된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98% 수준에 왔다, 그래서 세부 여러 가지 관련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장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합리적인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위원장 말씀이 틀렸다고 지경부에서 항변을 하면 안 되지.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이 지적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우리 광해관리공단 기술이 해외로부터 요청을 받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고 이 시장이 크니까 이번에 이 법은 좀 통과를 시켜서 우리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지식경제부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위원장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광해관리공단을 잘 알아요. 17대 때 법을 개정할 때도 제가 대표발의해서 법을 개정했고 이 조직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조직의 구성원들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광해관리공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주도적으로 무슨 계약을 체결해서 따올 수 있는 경영 분석할 사람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외국 나가서 이런 것 할 저기가 아니에요.

물론 옛날처럼 우리나라에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무역상사가 있을 때 종합무역상사가 계약을 해서 오면 여기서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광해관리공단이라는 회사는 해외 사업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외 사업이라는 것이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마케팅하고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해외 사업인데 광해관리공단의 회사 규모와 맨 파워가 절대로 이것을 수행해 내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하면 정부에 부담으로 와요.

계약을 잘못해 내면 최종적 피해는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그러면 광해관리공단이 그런 맨 파

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3자에게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새로 전문가를 채용하든지 둘 중의 하나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요.

○이종혁 위원 위원장님, 그 점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는 위원장님 지적이 상당 부분 옳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광해관리공단이 국내의 광해 방지 사업을 하면서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나 기술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든지 간에?

오늘 위원장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지경부에서 광해관리공단에다가 딱 그것을 해 가지고 단디 체제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도록 하세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알겠습니다.

○이종혁 위원 내가 볼 때는 다 그거한 건데……

그래서 해외 사업의 개척을 위해서 이 부분은, 이것 제가 오래 숙고해서 만든……

○소위원장 노영민 이것 이 위원님이 내신 거예요?

○이종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참……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네.

○이종혁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의 지적을 전부 다 해 가지고 광해관리공단하고……

○소위원장 노영민 그런데 이것은 6월에 합시다. 왜냐하면 광해관리공단이 회사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이게 오래된 회사도 아니에요. 아시지요?

○이종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6월달에는 통과시켜 주시겠다고 하니깐, 알겠습니다. 내가 위원장님……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이종혁 위원 이게 그렇게 특별하게 두 달 미루어진다고 해 가지고 당장 계약에 차질 오고 그런 것 없지요?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사람도 없어요.

○이종혁 위원 사람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없습니까?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및 제41항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2. 大韓石炭公社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시42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정부가 제출한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이 법은 정부에서 제출한 법으로써 법 문장 정비사항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와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전체위원회에서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5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과의 균형성을 고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은희 위원 고려해서 조정하면 얼마나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참고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위원회 소관 공사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 KOTRA 같은 경우는 50만 원, 광물자원공사는 50만 원, 수출보험공사 50만 원, 그다음에 한전은 200만 원, 석유공사 200만 원, 가스공사 200만 원, 가스안전공사는 20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50에서 200까지 있네요. 50이 많네요?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50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비도 좀 해 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런데 유사한 가스공사 이런 걸로 하면 200이 맞는 거지요. 200만 원으로 하시지요.

○김재균 위원 그렇시다.

○소위원장 노영민 200만 원 수준으로 하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 같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은 위원님들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득 의원 대표발의)

(12시44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이상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유인물 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사업에 유전사업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들 의견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영역과 중복해서 유전사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만약 허용한다면 공공기관의 기본체제 아래에서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공사의 설립 취지와 입법 방향이 다를 수가 있으며 중복을 최소화하는 법해석적, 법체계적 사항이 수반되어서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개발하면서 부수되는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사업도 현실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을 규정화시키겠다는 그런 입법취지고 또 그럴 실익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 조문으로도 해석상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이익이 있는 한편 그것을 현 조문으로도 할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 의견은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지적하는 한국석유공사하고의 역할 구분에 관련된 혼선 문제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위원님, 지금 현실

적으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하는 업무를 해외에 나가서, 물론 국내 업무를 빼놓고요, 석유공사는 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거라면 하지 말고 니네들은 이것만 해라, 또 가스공사는 그 반대, 이렇게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더더군다나 법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종혁 위원 이것은 심의를 좀 더 해 보자는 말씀입니까?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잠깐, 그런데 이것은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석유……

○김재균 위원 심의 더 합시다.

○소위원장 노영민 이것은 어차피 보류하시는 것이 나올 것 같으니까……

○배은희 위원 심의를 더 하는 걸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노영민 의사일정 제43항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노영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 의원 대표발의)(계속)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19)(계속)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21)(계속)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4.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5.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2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조승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29. 중소기업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이시중 의원 등 61인 발의)(계속)
-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3항 이시중 의원, 강창일 의원, 김희철 의원, 최구식 의원, 이정희 의원, 주성영 의원, 이용섭 의원, 노영민 의원, 안상수 의원, 이종걸 의원, 주승용 의원, 김재균 의원, 조승수 의원, 배은희 의원, 조배숙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5항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6항 및 제27항 김희철 의원과 김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조승수 의원 소개로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9항 이시중 의원 등 61인이 제출한 중소기업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발

전을 위한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관련 단체 관계자 세 분이 오셨습니다.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정부와의 협상에 그동안 참석했던 분들 같은데 배석을 희망하셔서 소위원장이 허락했는데 이의 없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경위 대안이 있었고, 지경부 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정의견이 있었고, 수정의견 이후에 지경위 대안에 대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은희 위원 잠깐만요. 그게 지경위 대안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소위원장 노영민 우리가 그렇게 불렀어요.

○배은희 위원 아니, 그거 저희가 이의제기를 했었고, 지경위 대안이 아니고 지경위 전체 안에서……

○소위원장 노영민 지경이 대안에 대한 안……

○배은희 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지경위 전문위원의 안이지요.

○소위원장 노영민 글썽, 그러니까…… 대안에 대한 안이라니까요.

○배은희 위원 대안이 없었는데, 지경위 대안이 없었어요.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니까 대안의 안이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전국상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지경부 사이에 협의했던 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안이 있어서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그러면 우선 오늘은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수정의견입니다. 마지막 수정의견인데, 이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식경제부가 이 수정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는 것으로서 오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문병철 전문위원입니다.

자료는 유통산업발전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조(정의)3호의2에서 “준대규모점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호에 보면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

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그리고 ‘나’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나’호가 들어간 것은 현재 보면 대형마트가 없는 GS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나’호를 별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8조에 있어 가지고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변경 등록” 해 가지고 대규모점포 또는 준 대규모점포까지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있어 가지고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때는 제한을 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등록과 관련해 가지고 입지조건이나 시설, 소음·교통 영향, 주민 안전시설 등에 관한 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등록 관련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할 수 있게 위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조의2를 신설해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행위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제한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49조에 벌칙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이에 준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관련되는 이런 규제내용은 일몰조항을 뒤 가지고 4년 또는 한 3년…… 3년 내지 한 4년 정도 일몰규정으로 하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지금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은 그동안 지식경제부와도 상당히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토론하면서 애초에 지식경제위 전문위원 대안이라고 우리 배은희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전문위원안을 상당 부분 수정한, 후퇴한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일단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

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전국상인연합회라든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쪽의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의할 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조 정의에서 가에 대해서 여기에 직영형태를 취하면서 외형만 가맹사업인 위탁형 가맹점도 포함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제8조입니다. 제8조 여기 보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협력사업 등 등록요건을 구비하여”라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49조 벌칙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뒤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00m 이내로 돼 있는데 이것을 1000m 이내로 해 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과규정…… 부칙에서 유효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5년 그리고 경과규정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개설된 대규모점포 등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재등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좀 뒤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식경제부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2차관 김영학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인 산업경제정책관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예,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입니다.

지금 이 수정의견이, 최종안은 오늘 처음 본 것이고요. 그전까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500m 이내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규제방식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합의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합의에 근접하는 전제는 사업조정 제도를 폐기하고 사전적인 조정 절차를 하면서 이게 합의가 됐었는데 중간에 총리실에서 정부안을 조율하기 위한 관계 부처 회의가 생겼는데요. 그때부터는 기타 지역, 그러니까 500m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사업조정 제도가 그대로 존치되는 안하고 지경부에서 당초처럼 사전적인 조정이 더 낫지 않느냐, 그게 소위 얘기하는 지역

협력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500m 이내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관계 부처 간의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있어서 전체 조건에 관계없이 거의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기타 지역, 500m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까지도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경부는 물론이고 정부의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은희 위원**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라고 했는데 준대규모점포의 정의가 뭐예요?

○**전문위원 문병철** 대비표 1페이지에 보시면 별도로 지금 정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그다음에 나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이게 사실은 대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이 경우는…… 나호는 사실은 대형점포가 없는 SSM만 운영하는, GS 같은 경우가 대형마트가 없답니다. 그런 것을 규율하기 위해서 나호가 필요합니다. 그게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입니다.

○**이종혁 위원** 이런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SSM이나 대규모점포의 체인점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문병철** 아니, 직영하는 점포이기 때문에 체인점은 포함이 안 됩니다. 체인점을 포함하려면 별도로 조항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종혁 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대기업에서 경영하는 체인점까지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이 크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 문병철** 예.

○**배은희 위원** 그런데 이 수정의견은 우리 업계에서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전문위원 문병철** 업계의 의견도 있고 실무적으로 정부 측하고도 상의를 했고 업계하고도……

○**배은희 위원** 아니, 정부 측도 오늘 처음 봤다고 그러고……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이런 안으로 올라온 것은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 수정안에 대해서 업계도 모른다고 그러고, 이 수정안을 누가 정한 겁니까?

○**이명규 위원**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정하지 않았어요?

○**전문위원 문병철** 예,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런데 수정의견이라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처음 낸 안이 있고 업계나 정부의 안을 정부와 같이 합의해서 수정안을 내야 되는데 단독으로 이렇게 수정의견을 내서 정부도 오늘 처음 본다고 그러고 업계에서 오신 분들도 모른다고 그러면 이것을 수정의견으로 놓고 우리가 지금 논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명규 위원** 글썄, 전문위원실의 단독 의견인데……

○**이종혁 위원** 그렇지. 이 수정의견이 외교통상부, 지경부, 총리실, 이렇게 해서 안을 내놓고 정부나 업계하고 이런 얘기 가지고 대충……

○**배은희 위원** 아니, 업계도 모른다고 그러고.

○**이종혁 위원** 최대공약수를 적용할 수 있는 의견이지.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법안이 거의 20개가량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놓고서 도저히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요구 조항을 한번 묶어서……

○**배은희 위원** 온 게 그게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들어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지경위의 전문위원 안으로 한번 마련해 보는 것으로 했던 거고 그것이 지경위 대안이라고 되어 있는 지경위 전문위원 안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보고서 지경부가 안을 냈어요. 이 지경부 안과 전문위원 안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경위 전문위원이 지경부 안을 보고 그다음에 지경위 대안이라고 했던 전문위원 안을 일부 수정하는 과정에서……

○**배은희 위원** 여지까지의 수정의견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부하고 합의되어서 온 게 수정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의견으로 하지 마시고 전문위원 두 번째 안으로 얘기해서 하세요.

○**소위원장 노영민** 그렇지, 전문위원 안에 대한 수정의견이에요.

○**배은희 위원** 예, 그렇게 쓰셔야지요. 보통 수정의견 하면……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배은희 위원** 그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문위원 수정의견, 전문위원 안Ⅱ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 문병철** 안으로 하겠습니다. 안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전문위원 안이지. 그것은 맞습니다.

○**이명규 위원** 지금 정 국장님이 아직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 법을 다룸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 생각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민의를 대변해야 되니까 중요한데, 문제는 이 법이 나중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경위에서 그냥 어찌고저찌고 통과시켜 놓으면 나중에 법사위에 가 가지고 아예 그냥 낮잠 자든지 그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종국적으로 우리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뭐가 꼭 필수인가 하면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해소하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지금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해소가 안 됐다고 그랬지요? 덜 됐지요, 오늘 아침까지도 해 가지고 안 됐지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예.

○**이명규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놓으셨는데 이런 법안을 낸 취지가 조금이라도 반영되려면 정부 부처 간에 의견을 빨리 통일해서 가지고 오는 안이 진정한 진짜 대안인데, 물론 그 와중에는 지금 업계에서 오신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는 과정도 거치겠지만, 그 대안을 놓고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우리끼리 머리 싸매고 논의해 봐야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살아남기가 힘들다, 어느 부처라도 반대하면 법사위에서 그것은 바로 그냥 낮잠 자고 창고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인에게 도움이 되고 이 법이 빛을 보려면 중앙 부처 간의 협의가 필수적인데 일단 협의가 덜 됐다고 그러니까 천생 이것은 다음으로 넘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런데 양당 원내대표 회담

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합의는 안 됐지만 일단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안으로 되면 존중한다는 것까지는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이 현실적으로 조율되기가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명규 위원** 지금 거의 다 됐다는데요?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아직도 안 돼 가지고 현실적으로 부처 간의 이견이 해소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결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불만족스러운 게 있더라도 정부 입장에서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대개 따라갑니다. 결국은 거기에 맞춰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좀 모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접근시켜 가야지 지금처럼 계속해서 정부 부처 간 협의에 맡겨 놓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달하지 않았느냐?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위해 우리가 시간을 많이 주었거든요. 정부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국회 내에서라도 의견을 좀 취합해서 안을 만들어서 정부한테 넘겨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 소위에서 이야기를 하면, 방망이를 두드려 버리면 소위를 통과하게 되는데 우리가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요. 우리가 정부 측에 안을 이렇게 모아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을 논의해 가지고 ‘이것 뭘 하자, 뭘 하자’ 이래 가지고 정부 측에 주면……

정부 측에서 우리가 이미 얘기하는 그 정도 라인도 벌써 전번에 이 회의할 때 외통부가 ‘죽어도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그때도 제가 같은 얘기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지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리 좋다고 그냥 우리 국민들 의사 반영해 가지고 법 막 만들어 놓으면 이것 어차피 안 되는 법이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열나게 애써가며 이렇게 이야기할 게 뭐 있나?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무리가 거의 다 되고 쟁점이 한두 개밖에 안 남은 걸로, 한 개 정도……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월 말에 법안 심사할 때는, 사실은 지금 외통부에서 안호영 조정관께서 와 계십니다마는, 그때도 오셔 가지고 전통시장 지역 자체 이외에는 한 발도 못 나간다고 그때 말씀을 해 가지고…… 그게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간에 부처 간에 모여서 총리실도 주관하고 지경부도 주관을 해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지금은 전통상업보존지역, 그러니까 500m 이내의 zoning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에서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해 준 상태입니다. 물론 사업조정 제도가 없어진 것을 전제로 했지만, 그런 상태이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500m 이외의 기타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크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 부처 간에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기타 지역에 대해서 강화된 등록제냐, 아니면 신고성 등록제냐, 아니면 상생법에서 사전적인 조사 요구만 할 것이냐, 이 정도가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합의를 못 봤기 때문에 외교부하고 총리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규 위원** 외통부에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오셔 가지고는 그야말로 전통시장 외에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이랬는데 오늘……

○**배은희 위원** 500m도 안 된다고 그랬지.

○**이명규 위원** 그때 500m도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안호영** 예, 그렇게 말씀 올렸었습니다.

○**이명규 위원** 500m도 안 된다고 아주 펄쩍펄쩍 뛰셨는데요.

전통상점가가 전국에 39개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안호영** 위원님, 수정의견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이명규 위원** 처음 봤어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안호영** 수정의견이

요. 수정의견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명규 위원** 아니, 지금 수정의견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안에 접근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논의된 게 대충 이런 쪽으로 된 게 아니었습니까?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논의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안호영**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요, 제일 먼저 제가 강조해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경부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 유통산업발전법이 서로 떨어져 있는 법은 아니고 사업조정 제도에서 출발된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조정 제도만을 가지고도 사실은 저희의 주요한 통상 파트너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조정 제도를 제대로 손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산업발전법만 규제가 더 강화된다면 그것은 말하자면 저희가 통상을 산업의 제일 기초로 하는 나라로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지경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올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4페이지를 위원님들이 봐 주시면 거기에 “전통시장이나 이에 준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말씀 올렸던 것은, 지금 막 이 위원님께서도 지난 2월의 외교부 입장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서는 우리의 통상 파트너들하고 얘기를 도저히 진전시킬 수가 없겠다’라고 제가 말씀 올렸었고요.

그러나 그간에 부처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전통시장 500m까지 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 그러나 준하는 전통상점가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 전통상점가라는 것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도리가 없겠다는 얘기를 관계 부처 간에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 지역 얘기인데요.

기타 지역은 지경부에서도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 과연 기타 지역에 대해서 어떤 체제를 가지고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 부처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없다고 저희도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면 전국에 39개 있는 전통상점가에 대해서는 별로 용인한 바가 없다, 받아들인 바가 없다는 얘기시네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안호영**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면 500m는 이제 받아들입니까?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안호영** 예, 그렇게 시도를 해 보겠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도를 해 보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 통상 파트너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이명규 위원** 500m까지는?

총리실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거의 다 된 걸로 내가 알았는데 지금 얘기해 보니까 또 다른 얘기하네.

○**소위원장 노영민** 전통상점가는 지경부가 받아들였던 것인데? 그것은 전국에 몇 개 안 되는데?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전통상점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처음에 외교통상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500m까지는 지경부가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유지를 해왔고.

그리고 두 번째, 500m를 떠나고 나서 사실 중소기업은 전통시장도 있지만 슈퍼마켓 같은 상점가가 중요하다고 저희도 인식을 해서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전통상점가는 어렵지만 그중에 10년 이상이 되고 39개라고 이렇게 특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좀 설득을 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고 외교부를 설득하는 중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교부를 설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명규 위원** 나머지 부분이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기타 지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명규 위원** 기타 지역이 어떤 점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기타 지역이 여기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2페이지에 보면……

○**이명규 위원** 등록 말입니까?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예, 등록에 대해서는 입지 조건, 시설, 이런 것들이 쪽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저희 지경부 입장은 규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사실은 조성법이고 여기에다가 규제를 걸쳐 놓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또 사업조정이라는 형태로 상생법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통법에 의해서 등록서를 내 주고 다시 똑같은 대상자를 놓고 상생법을 가지고 사업조정을 또 시도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꼭 기타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면 그 경우에는 차라리 상생법에 통합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 수준도 대폭 완화하면 좋겠다는 것이 지경부의 입장이고요.

그러나 이 지경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외교통상부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리실의 입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전통산업보존구역이 아닌 기타 지역에 대해서 신고제에 가까운 등록제로 해서 등록을 받아 주고 동시에 상생법에서 사업조정 제도는 그대로 두자는 것이 총리실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총리실 의견, 지경부 의견, 외통부 의견이 각기 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 지식경제부의 입장은 지금 등록하고 사업조정하고 2개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복수 규제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외통부도 그런 입장이지요?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안호영** 그렇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러면 국무총리실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국무총리실에서 오늘 아침 당정 협의 때 낸 자료에 의하면

거기는 신고제에 가까운 등록제를 기타 지역,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자는 얘기고요. 그렇게 규제를 가해 놓고 다시 사업조정 필요가 있으면 상생법에 따라서 사업조정을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곤란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올렸던 것이고요.

○**배은희 위원** 저번에 상생법할 때, 다른 법에 의해서 등록되는 것은 상생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명규 위원** 아니, 이게 그 취지가 아니야, 안 되더라고.

○**이종혁 위원**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지금 2개 부서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조정해 가지고 내놓은 게 아니라 새로운 분쟁거리를 달아 가지고 던지나?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지금 배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보충설명드리면 사업조정 제도를 나중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은 지역협력 계획이라는 게 등록제에 있어서 사전에 중소기업상인들의 조정 절차가 사전적으로 마련될 경우에 그런 사전조정 절차가 있으면 상생법에 의해서 사후적인 사업조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적인 조정 절차가 없으니까 사업조정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 지금 총리실안이 되겠지요.

○**이명규 위원** 이게 지금 문제인 게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예.

○**이명규 위원** 글썄, 중기청에서 오늘 아침에 중기청장이 얘기하기에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보라고……

현재 이 사업조정 제도는 사실 작년에 SSM 문제가 처음 불거질 때만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찾아보다가 사업조정 제도를 찾아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한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법을 좀 정비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그것은 내가 어디 보고서를 한번 봤더니 전부 올해 2월 달까지 ‘용역’, ‘용역’ 이런 식으로만 하더라고요.

정 국장님은 중기청이 사업조정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것 없어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사업조정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김재균 의원님도 의원입법으로 제기를 해 놓으셨습니까마는, 양쪽이 다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SSM이나 대형마트 쪽에서는 그 자체가 똑같이 투명성하고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지금 여기 와 계십니까마는 중소기업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오히려 대형유통 편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공정성하고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양쪽에서 다 공정성·투명성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기청에서 직접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양측이 다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용역이 나간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제가 보건대 이것은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배은희 위원님이나 이명규 위원님은 정부안이 아직까지도 예를 들자면 지경부, 외교교통상부 그리고 총리실까지를 포함해서 정부 기관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해당사자들—대규모점포 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수정의견이 정부안으로 나왔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노영민 위원장님 말씀은 이때까지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정부에 던졌지만, 그렇게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합의가 안 됐으니까 이제는 국회가 이런 쟁점 사안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서 우리가 안을 내놓아서 일단 한번 들이밀어 보고 의견도 들어가면서 결정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우선 두 갈래 방법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해야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지 이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는 솔루션이 안 정해져 가지고는 이것은 논의해 봐야 계속 이런 쳇바퀴 도는 얘기밖에는 더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노영민** 잠깐 정회해서 옆방에 가서 얘기하고 오지요.

○**이명규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노영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 소위원장 노영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발법과 관련된 법률안 21건과 청원 1건, 결의안 1건 그리고 상생법을 묶어서 우리가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이 조율된 의견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병철** 전문위원입니다.
 우선, 유통산업발전법 대비표를 가지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1페이지의 제2조(정의)는 살아남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변경) 1항·2항·3항까지 일단 살아남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의 제12조의2는 삭제이고, 별칙도 삭제고요.
 그다음에 제13조의3제1항하고 제2항은 살아남습니다.
 그게 정부 안입니다.
- 배은희 위원** 이거 전체 다 봐야 될 텐데. 이거 정부랑 안을 짤 때……
- 이명규 위원** 그런데 “이에 준하는 전통상점가” 개념이 이 정도 하면 됩니까?
- 전문위원 문병철** 그 39개를 어디에 넣지?
-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장 김종호** 이번에는 이것을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점가를 39개에 한하는 것으로 해서 이 39개를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안 그러면 이 상점가는 부대의견을 다는 게 아니라 전통상점가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부대의견에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39개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 이명규 위원** ‘이에 준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통상점가’, 그러면 돼요?
-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예.
-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장 김종호** 그래 놓고 부대의견에 39개 리스트를 달아 줘야 됩니다.
- 소위원장 노영민** ‘전통시장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전통상점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 이명규 위원** ‘이에 준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 소위원장 노영민** 이에 준하는 게 시행령에서 결정될 거니까, 그게 이중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부칙은 3년으로 하기로 했지요?

-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3년이지요, 3년.
- 배은희 위원** 부칙 몇 조 몇 호는 조정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 전문위원 문병철** 예,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노영민** 됐습니다.
- 이종혁 위원** 조문 조정은 다 하십시오.
- 소위원장 노영민** 체계하고 문구 정리는 위원장한테 맡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다 됐어요.
-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장 김종호** 전통산업보존구역 내의 것만 여기에 하나까……
- 전문위원 문병철** 그러니까 그것은 시행령에서 잡으면 되겠지요.
-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장 김종호** 아니지요, 그것을 시행령에서 잡을 수 없지요.
- 전문위원 문병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말하는 등록은 전통산업보존구역에서만 등록을 받고……
-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장 김종호** 이것은 법에 넣으셔야 된다고요.
-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안호영** 8조1항을 분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8조1항에 지역적 적용 범위가 분명히 안 나와 있거든요. 전통산업보존구역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 전문위원 문병철** 그 체계를 잡겠습니다. 전통산업보존구역 안에서만 등록은 하는 겁니다.
- 이명규 위원** 그거 되어 있네. “전통산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잖아.
-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위원님, 제2조에 보면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이것은 사실은 GS를 잡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표현만 가지고 있으면 GS 이외의 서점, 빵집, 아웃렛, 의류전문점, 생활용품전문점, 공구전문점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 전문위원 문병철** 여기도 부대의견으로 슈퍼마켓이라고……
-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이것은 부대의견이 아니라……
- 이명규 위원** 부대의견 빼자.
-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부대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 4712에 해당하는 점포를 50개 이상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래서 이 문구는 전문위원하고 좀 상의하겠습니다. 사실 GS를 잡기 위한 문구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는 피해가 없고 GS는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렇게 문구 정리를 나중에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고.

그러면 다 됐지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 없는 거지요?

○배은희 위원 정부, 이의 없으신가요? 다 확인하세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저는 그렇고, 외통부에서.....

○소위원장 노영민 외통부는 얘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의미 없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정부가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내지 제22항과 제24항 내지 제29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20건의 법률안과 청원 1건, 결의안 1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 안호영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은 외교부로서는 결국 사업조정 제도를 현행 제도보다 아주 완화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고요. 그것을 좀 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외통부의 의견은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

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5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17시28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내지 제53항 김희철 의원, 김재균 의원, 이정희 의원, 권성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상생법은 보면 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아까 여기에서 논의했던 식으로 김재균 의원님하고 이정희 의원님 안만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게 같은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중에서도 합의된 내용이 뭔가 하면 저희 심사자료 29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조정 대상에 대기업 체인점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28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29페이지에 보시면 ‘1. 대기업 2. 대기업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인점포(직영점형 및 프랜차이즈형에 한한다) 3.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 조항만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체계 자구는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그 내용만 포함시키고 김희철 의원님하고 권성동 의원님 안은 계류를 시켰다가 다음에 또 논의하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희철 의원님 안은 기존에 법 개정안의 목적이 다 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남겨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명규 위원 그 이후의 “(직영점형 및 프랜차이즈형에 한한다)” 하는 것은 지우는 거지요? 이것은 지워야 돼요.

○김재균 위원 ‘지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인점포.’

○이명규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직영점형 및 프랜차이즈형에 한한다)” 하는 것을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정 국장님, 그게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지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빼지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아니, 그것은 아까도 논의한 대로 자구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 아니, 자구 수정은 좀 방향을 주고 해야지 무턱대고 할 게 아니고……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 뒤의 “(직영점형 및 프랜차이즈형에 한한다)”를 지우고 ‘운영하는 경우 지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에 속한 체인점포’, 그렇게 해요.

문구가 어떻습니까? 문맥이 어떤지 모르겠네. 문맥이 조금 이상하기도 하다만……

○**이종혁 위원** 그런 방향으로 답아서 자구를 정리하세요.

○**이명규 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문맥을 정리하세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예.

○**이명규 위원** 그런데 괄호는 지웁니다.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이 의견을 문구만 좀 수정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가맹형 기타 종합소매업은 합의한 대로 부대조건을 달아 주시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하되 프랜차이즈형 중에서 종합소매업은 들어간다……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장 김종호** 아니, 편의점 제외하고……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아까 저기에서 얘기한 대로, 하이라이트 친 대로.

○**전문위원 문병철**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기 법에서 프랜차이즈형이 빠지더라도 시행령에서 프랜차이즈형도 포함해 가지고 종합소매업만 한 다……

○**이명규 위원** 아니, 영에서…… 나중에 연구해 봐요.

그냥 무턱대고 여기 부대의견…… 나는 부대의견 다는 것 반대예요. 부대의견 달지 말고 일단 지식경제부에서 알아서 책임지고 하세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그런데 위원님, 부대의견을 달지 않으면 나중에 부처 협의를 할 때 다른 업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관계 부처가 반대를 하면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당연히 기획재정부나 공정거래위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버틸 수가 없지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약속한 것을 이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종혁 위원** 아까 결정한 대로 그렇게 붙이려니까요.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그때 관계 부처한테 들이댈 근거로서 저희가 부대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여기에 프랜차이즈형이 명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랜차이즈형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전체를 위입하면 프랜차이즈형 자체가 반영이 못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프랜차이즈형을 포함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시행령으로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형 중에서 일부를 빼다든지, 시행령으로……

○**이명규 위원** 프랜차이즈형은 빼요.

○**소위원장 노영민** 위탁가맹형 중에서 프랜차이즈 체인사업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전문위원 문병철** 예, 그런 뜻을 법에다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법에 명시하고 그 프랜차이즈 체인사업 중에서 산업분류표상의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넘기는 것으로 아까 그렇게 했잖아?

○**이명규 위원** 괄호를 살리겠다 이 말입니까?

○**전문위원 문병철** 그 괄호 삭제가 아니고 조금 표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장 김종호** 그 시행령 내용을 여기에서 정해 주는 걸로 해야 돼요.

○**전문위원 문병철** 아, 그래요? 프랜차이즈형은 명시를 해야 돼요.

○**이종혁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법에 담길 자구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바로 딱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소위원장 노영민** 끝나기 전에 해요.

○**전문위원 문병철** 예.

‘지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인점포(직영점형 및 프랜차이즈형에 한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지정부령으로 넘기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장 김종호** 그런데 영에 담을 내용은……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그것은 또 부대의견에 달고.

○**지식경제부유통물류과장 김종호** 부대의견에 달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됐어, 부대의견 달기로 했어

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은 2008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된 동 법률안에 이미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었으므로 폐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1항 내지 제53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 문병철 아니, 52항까지입니다. 53항은……

○소위원장 노영민 53항도 문제없다고……

53항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문병철 잠깐만, 의사일정 53항은 권성동 의원님 내용인데 주로 임치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소위원장 노영민 이것은 따로 빼놓을 게 없어요. 같이 묶어서 해도 됩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그러면 대안으로 같이 묶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4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35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및 제45항 오제세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전문위원입니다.

중소기업청 소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제세 의원님과 정부가 제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시장정비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조합원 과반수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예를 참조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정비 및 과태료 규정 일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4항 및 제45항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룡 의원 대표발의)

원희룡 의원 대표발의)

4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17시38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및 제47항 원희룡 의원과 박순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심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희룡 의원님과 박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사업조합의 업무구역 등을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업조합의 경우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을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업조합의 감독권을 시·도지사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조합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모여서 결성이 됐는데 2007년 단체주의계약이 폐지됨으로써 중소기업 간 경쟁 제도의 도입으로 업무구역을 광역화하는 바람에 전국조합이나 지방조합과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감독권의 통일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조합의 조직 변경은 자율적인 사항으로 일부 체계·자구 차원에서 삭제가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다른 업종 중소기업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업종 조합원의 20% 범위 내에서 다른 업종 중소기업자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최근 경제 환경의 변화라든지 R&D 등에서 이업종 중소기업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다음은 조합 설립 발기인 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조합의 경우 15명 이상에서 30명 이상, 전국조합 및 2 이상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방조합의 경우 30명에서 50명으로,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은 시·군·구에 적정한 최소 발기인 수가 있어야 할 것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공동 기술개발, 공동 구매·판매 등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정한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 공동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절차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정회원의 대표자 또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회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방제에 의한 덕망 있는 자가 회장으로 추천 가능하게 중앙회장 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안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회장추천위원회의 신설은 회장선거의 중복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에는 없지만 정관 개정에서 회비를 13회 미납 시 6개월 경과해야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과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한테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피선거권의 제약 또는 사전선거 소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감독관청의 감독이 철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회장 자격 제한 및 회장추천위원회 신설을 삭제함으로써 현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가입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해 가지고 중소기업자라면 누구나 공제사업기금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체계·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 중앙회 회장을 반드시 중소기업자 중에서 해야 됩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중소기업자 중에서 하라고 개정안을 올렸는데요. 그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겁니다.

○이명규 위원 외부 영입은 이제 안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중소기업자,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원래.

○이명규 위원 그래서 여기 검토의견도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의 발전을 위해서 외부 영입이

필요한 경우에 이에 부응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맞습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이명규 위원** 현행 유지야?

○**소위원장 노영민** 전문위원 안이……

○**김재균 위원** 현행 유지, 좋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6항, 제47항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4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43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및 제49항 강창일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심사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창업 지원 시책과 관련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 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 창업 지원 시책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예비기술창업자 육성 및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사업 등 창업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예산 규모나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알선”을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으로 변경을 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및 이에 대한 자문”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사기업에 대한 공장 등록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분사에 의한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재택창업 지원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재택창업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항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개정안에서는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2010년 8월 3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2012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정부 측 의견을 들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희 위원** 3번 제4호·제6호 개정,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문병철** 아니고, 자문입니다.

○**배은희 위원** 자문만 합니까, 여태까지?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현재까지 상담회사가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한 사례는 전혀 없고요. 실익이 없습니다.

○**배은희 위원** 앞으로도 없을 겁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체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다 그렇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런데 굳이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을 못 하도록 막을 필요 있나요? 저는 개정안에 찬성인데,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및 이에 대한 자문” 이렇게 열어 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굳이 제한할 필요는……

○**입법조사관 남원희**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자기

가 상담회사인데 자기가 또 그런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문병철 그러니까 이게 상담회사니까……

○배은희 위원 그러면 상담이 뭔데요?

○입법조사관 남원희 컨설팅회사입니다.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상담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위낙의 물에 맞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문병철 설립을 상담해 주는 이런 입장 같습니다.

○배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물이 직접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보육하는 것을 상담하면 안 되는 겁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하여간……

○배은희 위원 현행에 있었잖아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이 있었고 그것을 하는 것을 자문해 주는 것을 더 한다 그러면 개정안으로 가는 게 맞지요.

○전문위원 문병철 현행 내용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었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이런 조항, 그게 아니고 사실은 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자문 이게 맞는 이야기지요, 이 법 취지에는.

○배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 다 넣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전문위원 문병철 그게 안 맞다고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삭제했습니다.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검토의견을 받아 가지고 한 거거든요. 설립·운영할 계획은 없다는 검토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가능성 자체는 열어 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배은희 위원 이것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확인하셨습니까?

○이종혁 위원 아니, 이 개정안 취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개정안 취지가 뭐예요?

○소위원장 노영민 이것 정부 발의입니까, 아니면……

○배은희 위원 정부 발의예요, 뭐예요?

○입법조사관 남원희 정부 발의입니다.

○이종혁 위원 개정안 취지가 뭐예요?

○입법조사관 남원희 원래 정부에서도 이렇게 냈었는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담회사가 설립·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으로 하려고 그랬

는데 사실은 문구가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상담회사 업무가 앞에도 보면 전부 상담, 컨설팅 업무지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실제 운영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입법조사관 남원희 그런데 굳이 이것만 넣어 줄 필요가……

그리고 하려고 그러면 따로 설립하면 되는 거지요.

○이종혁 위원 그러니까 상담회사의 원 업무의 기능이 컨설팅이니까 그렇게 정의를 명확하게 해 준다 그 얘기네?

○전문위원 문병철 예.

○이종혁 위원 알았어요.

○소위원장 노영민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및 제49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소기업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희 위원 이제 다 끝났나요?

○전문위원 문병철 특허청 남았습니다.

특허청 간단합니다.

○배은희 위원 아까 이것은 어떻게 논의하기로 했어요?

○소위원장 노영민 그것은 이따 얘기해요. 워딩만 하고 끝내기로 했어요.

○이종혁 위원 도시가스사업법은 6월에 통과시켜 주는 것을 원칙으로……

○소위원장 노영민 6월에 논의한다는 거지.

○이종혁 위원 처리한다 그랬지.

○김재균 위원 아니, 논의한다 그랬지.

○이종혁 위원 아니, 처리한다고 그랬지요. 논의하고 처리는 다르지.

○김재균 위원 하여튼 반대하든 찬성하든……

○배은희 위원 가스공사법은?

○소위원장 노영민 그것은 아까 보류된 거고.

○배은희 위원 아니, 오후에 논의하기로 했지요.

○이종혁 위원 아까 논의하기로 했어. 맞아.

- 배은희 위원 가스공사법하고 광산 피해……
- 이종혁 위원 그것도 유전사업 추가하는 데 별 문제 없으면 통과시킵시다.
-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이것은 아니야.
- 배은희 위원 아니, 그게 단서 조항이 있어요. 어떠한 경우냐에 대해……
- 소위원장 노영민 이따 논의해요.

5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5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17시50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및 제55항 서병수 의원과 김태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특허청 소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병수 의원님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위원의 자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최근 법 개정으로 위원 자격 요건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이렇게 규정할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조정 신청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조정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신청자의 자격을 권리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서는 위원회가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소 제기를 신청하여 조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김태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상담 및 서류 작성 지원, 심판·소송대리,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심판·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변리사의 업무를 넘어서 변호사법과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 업무와 변리사 대리권 찬반 논란 등을 감안하여 업무 수행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심판과 소송대리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일부 체계·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개정안이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입법이므로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가지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예,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특허청차장 김창룡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혁 위원 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발명진흥법,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그러면 전문위원 의견은 이 개정안에 동의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이 됩니까?

○전문위원 문병철 아니, 일부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일부 수정, 뭘 일부 수정하지요?

○전문위원 문병철 심사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2호에 변리사법……

○이종혁 위원 제26조의2 2항……

○전문위원 문병철 예, 그 2호에 보시면 ‘사항의 대리’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소송 대리 대신에 이렇게 2호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아니, 이게 변리사법 개정안에서도 계속 논의되어지는 얘기지만 산업재산권 관련 되어 가지고는 이게 전부 다 지적재산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저는 지금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도 내놓고 있는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에서조차 이 부분을, 예를 들자면 변호사법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시대적 정신에 맞는 업무 조정을 내역을 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자면 현재의 소위 특허법에 있어 가지고 침해소송에 관련된 것은 현재 변호사가 하고 변리사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적재산권이 지금 현재 이렇게 침해화되고 있는 시대 정신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변리사가 소송대리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판에 이런 특허상담센터의 업무에서조차 이 부분을 집어 넣는 것을 그러면 변호사법과 충돌, 이래 가지고 간다는 것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특허청?

○특허청차장 김창룡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제출하신 변리사법 공동대리권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고 또 해석상 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변리사법에 있는 규정대로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내면 변리사법이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심판·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있어도 변리사법이 통과가 안 되면 여기 있다 그래요……

○이종혁 위원 아니, 여기에는 심판·소송 대리라고 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센터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법률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리지.

○특허청차장 김창룡 지금 현재 개정안 26조의2의 2는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해석의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공동대리권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변리사법 2조의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이 변리사법 규정 그대로……

○이종혁 위원 아니, 변리사법도 전체의 조문을 보면 사실은 뭐냐 하면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특허청차장 김창룡 예.

○이종혁 위원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법원이 행정적 절차를 가지고 그것을 허용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번의 제 개정안의 취지는 이것을 딱 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것 아닙니까?

○특허청차장 김창룡 예.

○이종혁 위원 그러면 무슨 이게 변리사법 체계하고 어긋나지요? 그것은 법원이 지금 현재 어떤 절차적 관행으로 그런 통로를 막고 있을 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허청차장 김창룡 그래서 지금 현재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종혁 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더욱이나 공익변리사인데 특허상담센터의 업무에 이 부분을 넣는 것을 그 근거를 들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변리사법 체계가 바로 뭐냐 하면…… 특허청, 지금 내가 의견 개진하는 것은 맞지요?

○특허청차장 김창룡 예.

○이종혁 위원 그 전체의 조문을 보면 변리사가 소송대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놓았어요.

○특허청차장 김창룡 그런데 어차피 지금 현재 법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종혁 위원 허 참 내, 어차피 법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은 현재의 그 법……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 얘기 아닙니까? 현재의 변리사법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된다고 규정이

때 있다고 그런다면 개정되기 전의 것과 여기에 대한 형평이라든지 혹은 균형의 문제를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변리사법의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특허청차장 김창룡** 예.

○**이종혁 위원** 변리사법의 내용에 보면 1거기에 소위 말하는 변리사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절차로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그런 개정안 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허청차장 김창룡** 예.

○**이종혁 위원** 그러면 법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이것을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특허청차장 김창룡**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법사위에 법이 있는 그 과정에서 그게 통과되지 않는 한 지금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는 사실은……

○**이종혁 위원** 아, 그것 하고는…… 여기에, 아, 보세요. 발명진흥법 제26조의2의 2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허청차장 김창룡** 예.

○**배은희 위원** 여기에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특허청차장 김창룡** 지금 현재 변리사만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변리사만 있어요, 법으로? 변호사는 올 수 없어요, 특허상담센터에?

○**특허청차장 김창룡** 예, 변호사는 지금…… 변리사만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자, 내가 하나 더 질문드려요.

이 상담센터가 실질적으로 그게 법인 성격이든 기관 성격을 가지고 이런 소송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업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법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것은 심판·소송 대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상담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납니까? 실질적으로는 법률적 행위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특허청차장 김창룡** 지금 이 두 번째 항은 실제로는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규정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논란이 사실 있기 때문에 우선 변리사법 통

과……

○**이종혁 위원** 아니, 어디에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상담 및 서류 작성 지원, 심판·소송 대리,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특허청차장 김창룡** 그리고 두 번째 항, 2호……

○**이종혁 위원** 2호에 뭐예요?

○**특허청차장 김창룡** 2항에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고 두 번째에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대리를 하도록, 가능한 것처럼 지금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재균 위원** 대리를 한다 그말이야, 심판·소송의. 그런 문제가 있겠구먼.

○**배은희 위원** 변리사법이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허청차장 김창룡** 예, 그래서 변리사법이, 공동대리권이 통과가 되면 사실은 이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때 되면 다시 맞출 수도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혁 위원** 아니, 산업재산권 관련되어 있는 심판과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변리사법 개정안을 낸 취지는 특허침해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명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허청차장 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이종혁 위원** 특허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침해를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회사가 사용하는 데 무슨 손해배상을 해 내라, 혹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 이런 유에 관련되어 가지고 변리사가 공동소송대리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여기에서 산업재산권 관련되어 있는 심판·소송, 그게 변리사법 내 개정 취지 이외에 다른 광범위한 심판·소송이 여러 개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특허청차장 김창룡**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 옆의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나온 그 표현으로도 저희들은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은희 위원** 그것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종혁 위원** 어떻게?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배은희 위원** 예, 2조에 따라서 변리사가 하는

일이 다 되는 거지요.

그러면 수정의견으로라도 변리사법을 통과시키도록 빨리 좀 가셔서 하시지요.

○이종혁 위원 어데요?

○배은희 위원 법사위.

○이종혁 위원 아, 법사위에, 그것은 마지막 데드라인을 내가 지금 읽고 있지요.

○배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은 원하시는 대로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종혁 위원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법 제2조가 뭐니까?

○특허청차장 김창룡 2조 규정 자체가 특허청……

○이종혁 위원 조문 좀 한번 쭉 보세요.

○특허청차장 김창룡 예.

○이종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변리사법 개정하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자 그 말씀입니까?

○특허청차장 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변리사법이 통과되면 사실은 이 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또 그때 저희들끼리 바뀌고 되고……

○이종혁 위원 그런데 오늘 특허청이 나는 이 발명진흥법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게 상당히 의외다, 내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특허청이 앞장서서……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얼마 전에 우리 방으로 한 중소기업 업체 사장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내 방으로 상담하러 들어오는데 바들바들 떨면서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허리, 척추 수술할 때 쓰는 지춥대를 이 업체가 유럽하고 지금 현재 전부 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 500만 불을 수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계 회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딱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 담당자가 누구냐? 김앤장이야. 이 업체는 아무 데도 찾아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날 찾아온 거예요.

그 하소연의 일성이 뭐냐?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기업 특허침해소송 관련돼 가지고 중소기업은 아무 데도 법률상담 갈 데가 없어. 일반 변호사사무실로 가면 김앤장하고 붙어서 이 침해에 대한 다툼을 할 수 있습니까? 김앤장이나 몇몇 우리나라의 3대 로펌을 찾아가면 중소기업은 문전박대예요. 글로벌 기업, 외국 다국적 기업, 그

사람들 특허침해소송 관련된 건수만 가지고도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아무것도 받지를 못해.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을 다 죽일 거예요? 특허청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진보적 입장을 내 봐야지.

○소위원장 노영민 우리 이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지요?

○특허청차장 김창룡 예, 이 위원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우리 이종혁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알았을 거라고 믿고요.

의사일정 제54항 및 55항……

○이종혁 위원 내가 이번에는, 어차피 이 법안을 가지고 현재 싸워야 되니까 이걸 내가 그냥 넘어가는데 특허청이 말이지요, 앞으로……

○특허청차장 김창룡 예, 이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및 제55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18시06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철 심사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박람회출품한 상품에 사용된 상표를 상표등록출원하는 경우 별도의 입증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차장 김창룡**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8시07분)

○**소위원장 노영민** 다음은 오전에 심사했던 의사일정 제39항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건은 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과 KDI의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노영민** 그러면……

○**이종혁 위원** 두드리시기 전에, 오늘 잘 아시다시피 곧 지식경제위원회에 새로운 위원들이 오시기도 하고 또 기존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여기에 참여했던 법안소위 각 소속 정당의 이름으로 6월 국회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찬반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다들 합의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아니,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했는데 이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종혁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예, 됐습니다.

○**이종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노영민** 예, 그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와 관련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배은희 위원** 43항……

○**소위원장 노영민** 그것은 아까 계류하기로 됐어요.

○**배은희 위원** 아니에요. 토의하기로 됐는데, 계속 논의하기로……

○**전문위원 문병철** 아까 계속 소위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노영민** 오늘 법안심사와 관련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재균	노영민	배은희	이명규
이영애	이종혁	이학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대수
전문위원	문병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 산업경제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국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차장 전국상인연합회장 전국소상공인단체 연합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	안호영	김영학 정재훈 김경수 이관섭 최형기 김동선 김창룡 최극렬 김경배 이정식
--	-----	--